

KOTRA 자료 12-044

중국 특허관리 종합 매뉴얼



머리말

중국은 미국에 이어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 확대와 함께 지재권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말 기준, 중국의 지재권 총 출원 건수는 약 305만건(특허 53만, 실용신안 58만, 디자인 52만, 상표 142만)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지재권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면서, 특허출원의 질적 고도화·지재권 활용극대화 등, 지재권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재권 강국 부상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경쟁력 및 분쟁 대응력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글로벌 지재권 격전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내 지재권 창출·활용·보호 역량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대중국 교역비중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지식재산권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KOTRA 상하이 IP-DESK는 특허청과 함께 우리기업의 중국과 비즈니스 시 발생하는 특허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국 특허관리 종합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체계적인 특허관리 방법부터 기술계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기업이 현장에서 특허보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모쪼록 이 자료가 우리기업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발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KOTRA 상하이 IP-DESK 직원과 심상희 특허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KOTRA 상하이무역관장 **김상철**

CONTENTS

제 1 부 특허관리

- I. 특허유형 및 개념 · 2
- II. 특허출원절차 · 2
- III. 특허출원서류 · 11
- IV.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 13
- V. 특허권을 부여하는 실질적 조건 · 16
- VI. 특허의 무효선고 · 20
- VII. 특허침해 · 23
- VIII. 특허조사 · 30
- IX. 선행권을 이용한 기술비밀의 도용을 예방 · 33
- X. 영업비밀 관리 · 36
- XI. 전시회기간의 특허보호 · 47

제 2 부 기술계약

- I. 기술계약 · 50
- II. 기술개발계약 · 54
- III. 기술양도계약 · 57
- IV. 기술자문계약 · 64
- V. 기술서비스계약 · 65
- VI. 기술수입계약 · 76

제 3 부 특허관련 법령

- I.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 72
- II.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 88
- III. 특허행정집행판법 · 122



제 1 부 특허관리



I. 특허유형 및 개념

1. 발명특허

발명은 제품·방법 또는 제품·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제출한 신규의 기술방안을 말한다.

2. 실용신안특허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과 구조 또는 제품의 형상과 구조의 결합을 위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신규의 기술방안을 말한다.

3. 디자인 특허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의하여 미감이 풍부하며 공업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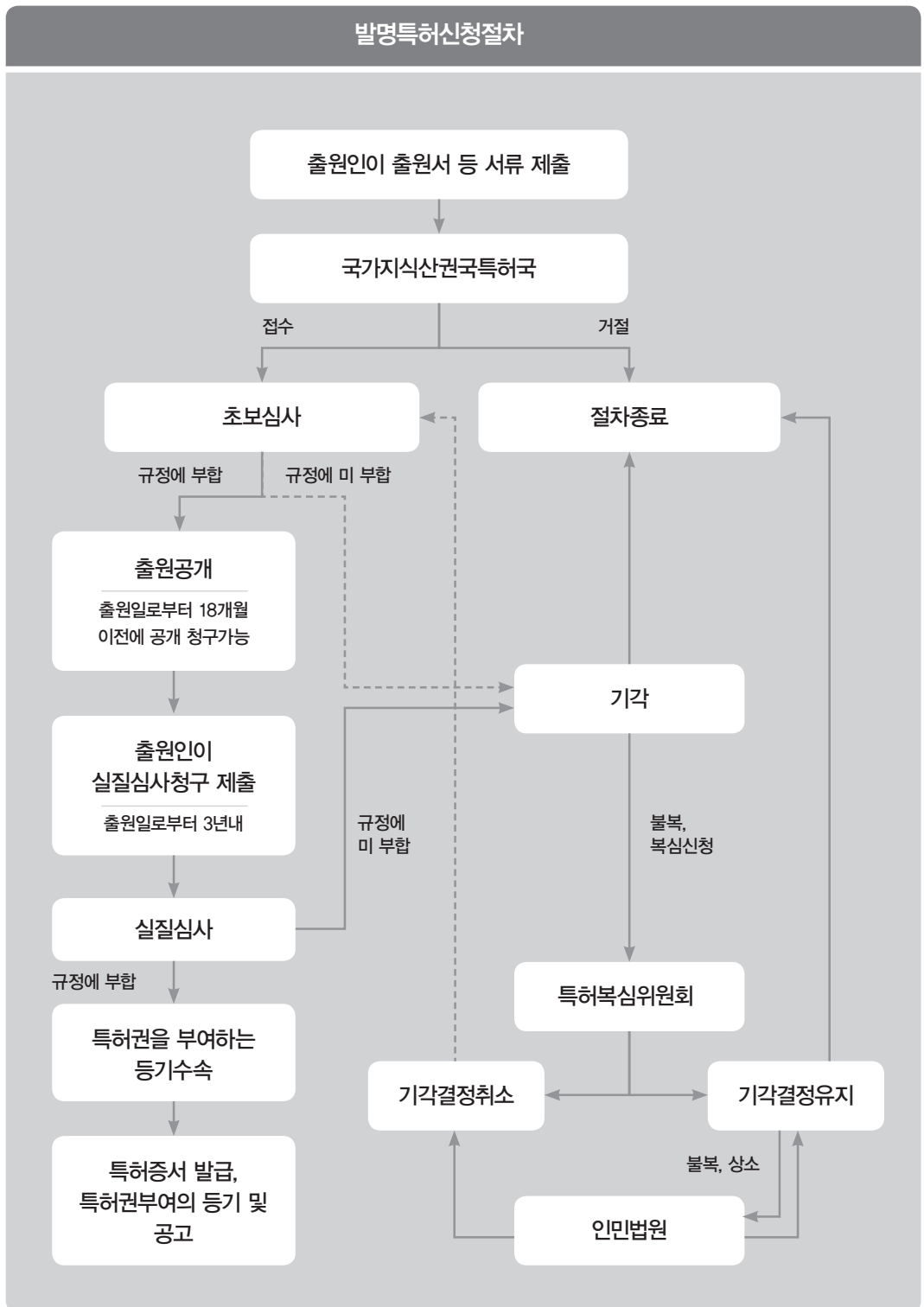
II. 특허출원절차

1. 특허 출원 및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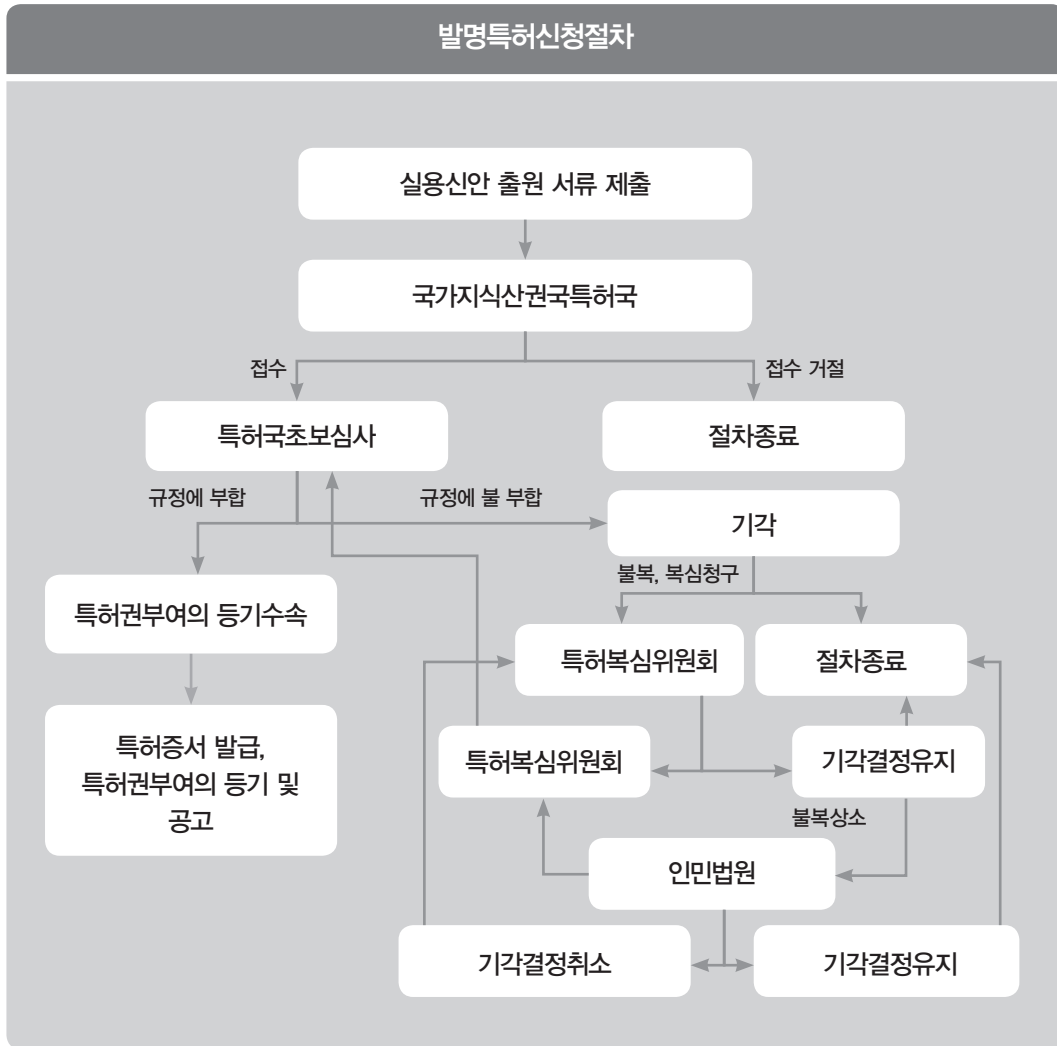
주: 이 절차는 특허법 및 특허법실시세칙에 근거하여 제작하였다. 초보심사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복심신청하여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초보심사결과를 취소한 경우 다시 초보심사단계로 돌아가서 계속 심사하여야 한다. 실질심사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복심신청하여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실질심사결과를 취소한 경우 실질심사단계로 돌아가서 계속 심사하여야 한다.

수속절차

발명특허출원의 수속은: 출원 → 심사접수 → 초보심사 → 출원서류공개 → 실질심사청구 → 실질심사 → 특허권을 부여하는 등기수속 → 특허증서 발급, 특허권부여의 등기와 공고



2. 실용신안특허와 디자인특허의 출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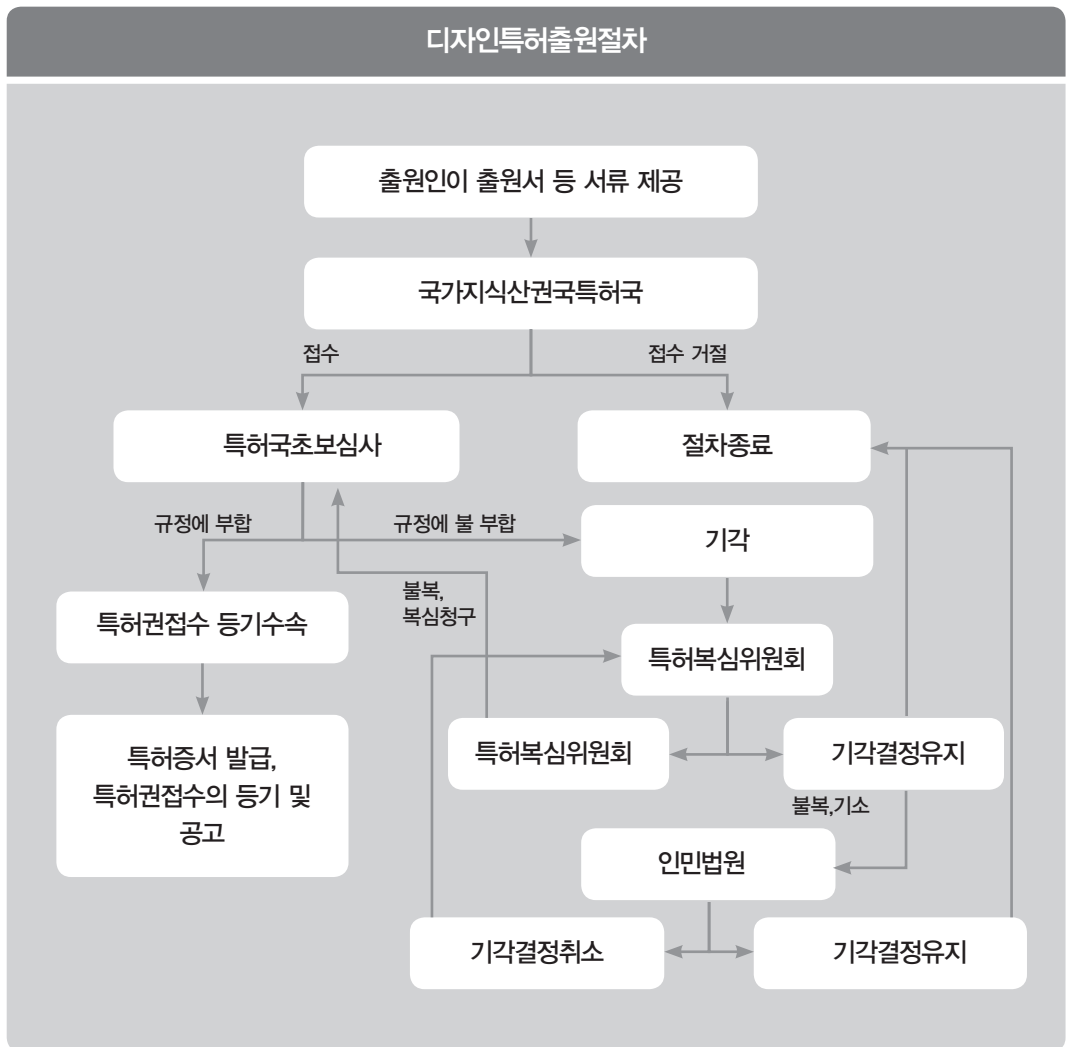


실용신안특허의 신청수속은:

출원 → 심사접수 → 초보심사 → 특허권부여, 등기수속 → 특허증서 발급, 특허권부여의 등기 및 공고

3. 외국인·외국기업 및 외국기타조직이 중국특허출원에 관한 규정

중국에 계속되는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인의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호혜원칙 하에 특허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새로 수정한 특허법 제19조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 전 특허법 은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면 위탁할 수 있는 특허대리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외국 특허 출원인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 편의가 제고되었다.

4. 우선권

특허출원인이 어느 한 계약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또 다른 계약국에 출원을 하였다면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외국 우선권-----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인의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 또는 서로 승인한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국내 우선권-----발명, 실용신안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서 제1차로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의 특허출원을 할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출원 시 서면으로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하며 3개월 내에 제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서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서면으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기한내에 제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5. 특허출원의 접수

가. 접수기구

국가지식산업국은 국가특허행정관리부서로서 전국의 특허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통일적으로 특허출원을 접수심사하고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한다. 특허출원인은 직접 국가지식산업국 특허국접수처(북경시)또는 각지의 특허국대리처에 청구서 등 출원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국가지식산업국 특허국접수처에 관련된 자료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2004년 3월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출원과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때 법에 의해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나. 특허출원이 거부되는 상황

특허출원서류에 아래 사항이 존재할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접수를 거부하고 출원인에게 통보한다.

- (1)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 출원이 출원서, 명세서(실용신안에 첨부도면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와 권리요구서가 없는 경우, 디자인특허가 청구서, 도면 또는 사진, 간단한 설명이 없는 경우;
- (2)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3) 특허법실시세칙 제121조(각종 출원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해야 하고 글자는 검은 색이어야 하며 정연·분명해야 하며 지우거나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첨부도면은 제도도구와 흑색잉크를 이용해 제작해야 하고 선이 고르면서도 분명해야 하며 지우거나 수정해서는 아니된다.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첨부도면 및 요약은 각각 아라비아숫자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야 한다. 출원서류의 문자부분은 가로방향으로 적어야 하며, 종이는 한 면만 사용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4) 출원서에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가 없는 경우;
- (5)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제1항(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관련 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상호 호혜원칙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중국 영내의 법에 의하여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 하고 처리한 경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6) 특허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명확하지 않거나 확정짓기 곤란한 경우.

6. 특허출원의 초보심사

초보심사는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의 구비여부와 이 서류들이 법령에 규정된 형식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아래 각항을 심사한다.

- (1) 발명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혹은 특허법실시세칙 제16조,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특허법 제2조 제2항, 제26조 제5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혹은 특허법실시세칙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혹은 특허법실시세칙 제16조 내지 제19조까지, 제21조 내지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4항, 제26조 제3항,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3조 또는 특허법실시세칙 제20조,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3) 디자인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 제1항제6목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혹은 특허법실시세칙 제1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특허법 제2조 제4목,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31조 제2항 혹은 특허법실시세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 (4) 출원서류가 특허법실시세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발명특허출원이 초보심사를 통과하면 초보심사합격통보서를 발급한다.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권은 초보심사를 통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서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본 법률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한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도 있다. 출원인이 조기 공개할 것을 청구할 경우 거절하는 경우 외에는 즉시 출원을 공개하여야 한다.

8.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

실질심사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심사를 포함하여 특허권을 부여할 필요조건이 구비되었는지를 심사한다.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내에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이 지나도록 실질심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특허법 제35조 제1항).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발명특허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할 경우,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나라에서 출원을 심사하기 위해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제3자 의견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특허법실시세칙 제48조).

심사기관이 이와 같은 정보제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반드시 특허권 수여 공고일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발명특허에만 적용할뿐 실용신안과 디자인특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특허출원의 권리부여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며 발명특허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등기하고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용신안특허출원이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서 실용신안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며 상응한 특허증을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하고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특허법 제39조와 제40조).

디자인특허출원이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서 디자인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며 상응한 특허증을 발급하며 동시에 등기하고 공고한다. 디자인특허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출원으로부터 등기까지의 평균시간은 3~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특허법 제23조와 제40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권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매년 상응하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한 당해 연도 이후의 연차 등록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차 등록료 납부일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체납금액은 납부시간을 1개월 초과할 때마다 당해 연도 등록료의 5%를 가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은 연차 등록료 납부일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1. 특허출원의 거절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의 필요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여전히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출원은 초보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보하며 지정한 기한내에 의견진술 혹은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보충수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특허법실시세칙 제44조).

12. 특허출원의 복심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거절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에서 복심한 후 결정을 하고 특허출원인에게 통보한다(특허법 제41조 제1항).

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특허법 제41조 제2항).

특허복심위원회에서 복심을 한 결과, 원 거절결정이 특허법 및 그 세칙의 관련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보정을 통해 특허출원서류가 원 거절결정의 근거가 되었던 거절이유를 극복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 심사부서에서 계속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특허법실시세칙 제63조 제2항).

III. 특허출원서류

1.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출원서류

가. 서류유형

발명특허 출원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 8가지 이다(1식 1부).

〈서류1〉 출원서	〈서류2〉 설명서 총괄 요약	〈서류3〉 권리요구서	〈서류4〉 권리요구서	〈서류5〉 설명서
〈서류6〉 설명서 첨부	〈서류7〉 실질심사청구서	〈서류8〉 대리인 위탁서		

- ※ 서류1, 2, 4, 5는 필수 서류
- ※ 서류 3, 6은 필요시 제출
- ※ 서류7은 출원후 3년 내 제출
- ※ 서류 8은 대리인에게 위임 시 제출

실용신안특허 출원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아래 7가지이다.

〈서류1〉 출원서 (1식2부)	〈서류2〉 명세서 요약	〈서류3〉 요약 부도	〈서류4〉 특허청구범위	〈서류5〉 명세서
〈서류6〉 명세서 부도	〈서류7〉 위임서			

- ※ 서류 1, 2, 4, 5는 필수 서류
- ※ 서류 3, 6을 필요 시 제출
- ※ 서류7은 위임대리인이 있을때 제출
- ※ 비용의 감액, 납부연기신청서 등

나. 명세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출원서의 명칭과 일치해야 하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술분야: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이 소속된 기술분야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2)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이해·검색·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상기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문헌을 인용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3) 발명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려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한 기술방안을 명확히 기재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4) 첨부도면설명: 명세서에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각 첨부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 (5) 구체적인 사용방법: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는데 알고 있는 최적의 방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과 대비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 출원인은 상기 규정의 방식과 순서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고, 명세서의 각 부분마다 앞에 제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을 기타 방식 또는 순서로 작성하여 명세서의 분량을 줄이는 동시에 타인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명세서는 단어사용이 규범화되어야 하고 어구가 명확해야 하며 ‘권리에서 요구한 것처럼……에서 서술한 것처럼……’ 과 같은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영업성의 홍보용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에 유전자원의 직접적 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다. 권리요구서

권리요구서는 특허출원서류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권리요구서는 명세서를 토대로 하여 간단명료하게 특허보호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에 여러 항의 권리요구가 있을 경우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 순서를 매겨야 한다.

권리요구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는 명세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와 일치하여야 하며 화학식 또는 수화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세서의……부분이 진술한 것과 같이” 또는 “그림……이 제시한 것과 같이” 라는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디자인특허 출원 서류

〈서류1〉 디자인출원서 (1식2부)	〈서류2〉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서류3〉 간단한 설명	〈서류4〉 위임서
---------------------------	--------------------------	-----------------	--------------

※서류1, 2, 3은 필수서류

※서류4는 대리인에게 출원을 위임할 경우 제출

가. 도면 또는 사진

특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원인이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색채 보호를 청구하는 디자인특허출원은 컬러 도면 또는 사진을 1식2부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은 보호가 필요한 각 디자인 물품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설계요점 그리고 디자인 설계요점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 1부를 지정해야 한다. 투시도 또는 색채보호 청구를 생략한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에 이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한 물품에 여러 개의 비슷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특허출원으로 하는 경우 간단한 설명에 그 중 하나를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홍보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물품의 성능을 설명해서도 안 된다(특허법 제27조, 특허법실시세칙 제28조).

IV. 특허출원시 유의사항

1. 특허공개 후의 리스크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되면 공중은 출원내용을 알 수 있고 당해 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지만, 이

단계에서 발명특허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므로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 보상은 요구할 수 있다.

중국 특허법 제13조는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발명을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이 출원인의 경고장을 받은 후 출원인의 발명이 아직 특허권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지급을 거절할 경우, 출원인은 방법을 강구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부여 받은 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을 취득한 후, 출원인은 특허행정기관에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였던 기업 또는 개인에 관한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사칭출원(모인출원)

사칭출원이란 타인의 특허기술을 도용한 본인 또는 제3자가 발명자의 신분으로 지식산업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책: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은 자신의 기술정보 관리능력을 구비하는 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출원권)의 귀속을 확정하기 위하여 특허행정관리부서에 조정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은 기술개발계약(위탁개발계약, 공동개발계약) 및 직무발명 규정에서 명확히 약정하는 동시에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특허행정관리부서의 조정 또는 법원의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다.

3. 오역문제

최초의 국제출원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다만, 특허서류의 번역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높은 전문지식과 이해능력을 필요로 하나, 현재 중국에는 전문 번역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권리요구서 또는 첨부도면 중의 문자의 중국어번역이 틀린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최초국제출원서류에 의거하여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특허발명출원을 공개하거나 실용신안특허권의 준비사업을 공고하기 전 (2)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발급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단계에 들어간다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출원인이 번역문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서면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번역문수정비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 통보서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시정하는 경우 지정한 기한내에 서면청구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번역문수정비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이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책: 따라서 외자기업은 특허출원서류의 중국어 번역본에 대하여 원문 대조 및 확인을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특허번역인재의 양성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기업 및 특허대리사무소의 중국 대외특허사무소의 번역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중국어 번역의 대조 및 확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번역을 의뢰하기 전에 상대방의 업무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다중 언어번역본(영문, 중국어, 기타 언어)에 관한 동시 번역대조도 오역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의 대외특허사무소에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인재들이 매우 많으며 상기 유학파들은 영어수준이 매우 높다. 일례로 미국에서 PCT 특허 출원 시, 이들의 번역본은 매우 정확했으므로 최초 특허서류가 영문일 경우 일정한 수준에서 오역을 줄일 수 있다.

4. 특허사무소의 비밀 누설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은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중국 현지 특허사무소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에는 많은 특허사무소가 있으나 대외출원대행은 10-15개 정도의 대형 대외특허사무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각 특허사무소는 대부분 여러 외자기업의 특허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기 외자기업 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술비밀 누설 위험이 상존한다.

대책: 따라서 경쟁사의 특허업무를 대리하는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사전에 의뢰하려는 특허사무소의 고객리스트를 조사하여 그 중에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의뢰하려는 특허사무소의 보증서를 받아 비밀유지의무를 약정해야 한다.

제3차 개정 특허법은 국가지식산업권에서 지정한 특허사무소 외에 일반적인 특허사무소에서도 대외특허출원을 대리할 수 있게 개정하여 대외특허대리기구의 절대적 수량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행기구의 업무수준으로 보면 명확히 대외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대행기구의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경쟁사와 서로 같은 대행기구에 의뢰할 확률이 낮아질 지의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5.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상실 예방

특허권자는 기한 내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 비용 미납으로 인한 특허권 종료를 예방하여야 한다(특허법사용조례 제98조의 규정).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받은 당해 연도 이후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금액이 부족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하여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동시에 체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체납금 금액은 납부기간 1개월 초과시 마다 당해 연도 등록료의 5%를 가산한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특허권은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종료된다.

V. 특허권을 부여하는 실질적 조건

1. 권리를 중복 부여하는 것을 금지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모두 출원하여 먼저 획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이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선언하면 발명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허법실시세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둘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날에 각각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 통보를 받은 후 출원인들이 스스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선출원주의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한다(특허법 제9조).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창조

법률,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하거나 이용하고 그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발명과 실용신안특허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요구

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보호객체(客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각 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1) 과학발견
- (2) 지능활동의 규칙과 방법
- (3)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
- (4) 동물과 식물 품종; (그중 동물과 식물품종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한 생산방법은 비생물학적 방법을 가리키며 생물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기술이 해당 생산방법이 도달하려는 목적이나 효력에 주요한 공제작용이나 결정적 작용을 발휘하였을 경우 이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에 속하지 않는다.)
- (5) 원자핵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

나. 신규성

신규성이란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의 공중이 알고 있지 않아야 하고, 어떤 기업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일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 공개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한 특허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는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1)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이 기준은 2009년 10월 1일에 시행한 새특허법 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정으로서 원 특허법의 규정보다 신규성 의제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 여기서 채용한 것은 “절대적인 신규성”의 원칙으로서 특허권 부여 대상이 되는 발명창조가 국내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중에게

알려져서는 안된다고 요구하였다.

다. 창조성

창조성이란 출원일 전에 국내외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과 대비하여 해당 발명은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기술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해당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기술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의 현존기술은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라. 산업이용 가능성

산업이용가능성이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마. 충분히 공개

명세서에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바. 권리요구서가 지지를 얻으려면 간단명확해야 함

권리요구서는 명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간단하고 명확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할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사. 유전자원 공포

유전자원에 의거하여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에 이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시적인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원시적인 출처를 설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아. 단일성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제한되어야 한다. 하나의 총체적 발명구상이 두 가지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제출한 하나의 총체적인 발명구상의 두 가지 이상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서로 연관되어야 하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서로 같거나 또는 관련된 기술특징을 포함해야 하며, 그 중 특정한 기술특징은 각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총체로 해야 하고 선행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특징이어야 한다.

자. 보정은 최초 권리요구 범위를 초과하지 말 것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서류의 보정은 원 명세서와 권리요구서에서 기재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서류의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특허법 제33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청구 제출시 또는 국무원특허행정부서의 실질심사단계 진입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발명특허출원에 관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해당 실용신안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특허출원서류에 존재하는 문자와 부호의 명백하고 현저한 착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특허법실시세칙 제5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보정부분은 일부 문자의 보정 또는 증가 및 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해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의 보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특허법실시세칙 제52조).

5. 디자인특허를 부여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 요구

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보호범위

평면인쇄품의 도안, 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

평면인쇄품에 디자인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2009년 새특허법 에서 제정한 새규정이다. 주요한 원인은 중국이 물품의 디자인 개발수준을 제고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작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디자이너들이 높은 수준의 제품 디자인에 역량을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 현존 설계에 속하지 않으며 저촉되는 디자인출원이 없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디자인은 현존 설계에 속하지 말아야 하며 임의의 단위나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도 않았으며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다. 현존 디자인과 대비하여 현저한 구별이 있음

특허권을 부여하는 디자인은 현존 설계나 현존 설계의 특징의 조합에 대비하여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특허법 에서 말하는 설계는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져있는 설계를 말한다.

라.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안됨

특허권을 부여받은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되지 않아야 한다.

마. 명확해야 함

특허법 제27조에 의거하면 출원인이 제출한 디자인과 관련된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바. 단일성

하나의 디자인특허출원은 1건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제품에 2건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한 유형이고 한 세트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2건 이상의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특허법 제31조 제2항).

사. 보정은 최초 권리요구 범위를 초과하지 말것

출원인은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출원서류의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디자인특허출원에 주동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은 국무원특허행정부서에서 발급한 심사의견통보서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하는 경우 통보서에서 지적한 결함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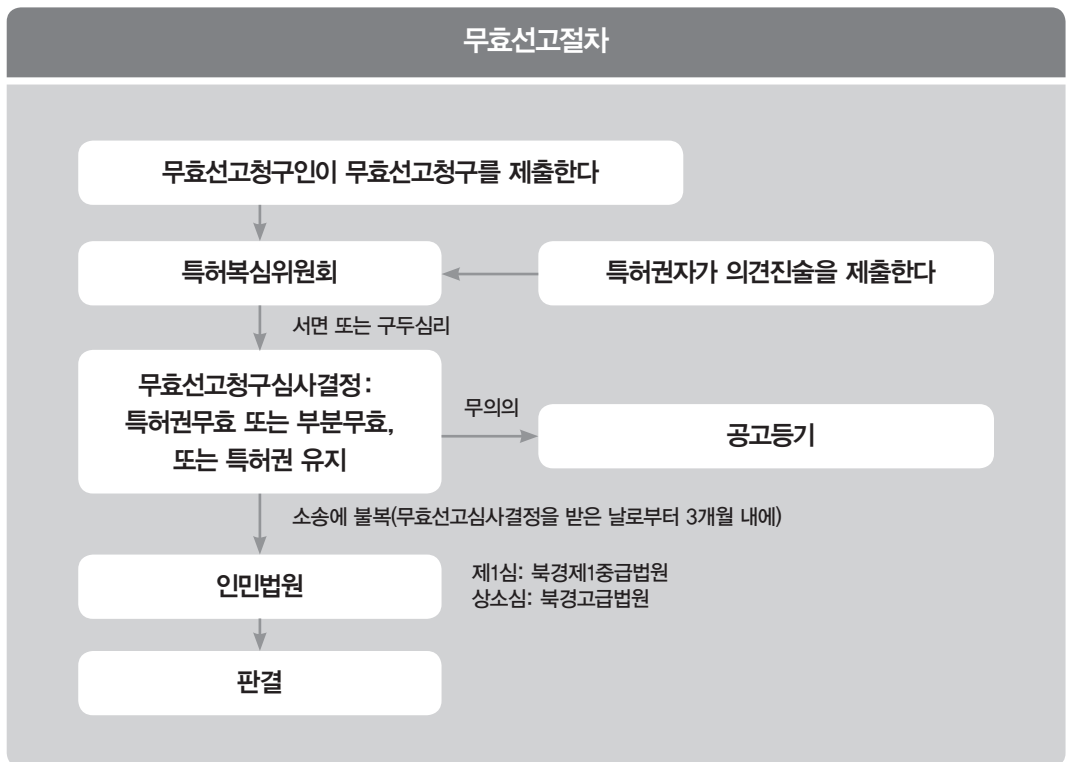
국무원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중의 문자와 부호의 명백하고 현저한 착오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스스로 보정한 경우 출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특허법 제33조, 특허법실시세칙 제51조).

Ⅵ. 특허의 무효선고

자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타인이 이미 취득 또는 출원한 특허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특허권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특허권무효선고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권리침해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발명특허는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므로 특허권무효의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는 초보심사 후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므로 일반적으로

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실질적 특허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허권의 무효를 선고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1. 무효선고절차



가. 무효선고청구제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부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당해 특허권의 부여가 특허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45조).

- (1) 청구시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부여를 공고한 날부터
- (2) 청구인 자격: 누구든지
- (3) 청구기관: 특허복심위원회
- (4) 무효이유 추가 및 보충증거 제출: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접수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무효이유(특허법실시세칙 제65조 제2항)

- (1) 특허법 제20조 제1항의 비밀유지심사와 관련된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2) 특허법 제22조의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 창조성, 실용성을 구비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3) 특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디자인의 신규성, 창조성 규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선행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 (4)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
- (5) 특허법 제26조 제4항의 권리요구서는 명세서에 근거하여야 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6) 특허법 제27조 제2항의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7) 특허법 제33조의 특허출원서류의 보정은 최초 기재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8) 특허법실시세칙 제20조 제2항의 독립적인 권리요구는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9) 특허법실시세칙 제43조 제1항의 분할출원은 원출원기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10) 특허법 제5조 또는 제25조에서 열거한 발명창조에 속하는 경우.
- (11) 특허법 제9조의 중복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선출원주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특허법 제45조).

나. 무효선고청구의 심사와 결정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며,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 (1) 특허권자는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심사과정 중 출원한 내용을 보정할 수 있으나, 보정의 범위는 제한을 받는다.
- (2) 이미 심사결정을 내린 무효선고사건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하여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다시 무효선고청구를 하는 경우 접수와 심리를 하지 않는다(일사부재리-동일사건을 동일한 소송이유로 재접수하지 않는다는 의미) (특허법 제46조 제1항).

2. 특허권무효선고의 효력

무효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 및 조정서, 이미 이행 또는 강제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사용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특허법 제47조 제2항).

앞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침해배상금, 특허사용료, 특허권양도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공평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7조 제3항).

3. 무효선고청구 심사결정의 행정구제

특허복심위원회에서 선고한 특허권무효 또는 특허권유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6조 제2항).

Ⅶ. 특허침해

1. 행정구제경로

특허법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특허를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으로써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 당사자간에 협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협상이 안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해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면 침해인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인이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않을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행정집법방법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 제8조: 특허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특허침해 분쟁해결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
-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한다
-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 (4)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와 관할에 속하여야 한다
- (5) 당사자가 이 특허침해분쟁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아야 한다.

2. 특허침해 사건의 처리절차

가. 관할

특허법실시세칙 제81조에서 특허침해사건의 관할범위를 규정하였다.

- (1) 당사자가 특허침해분쟁을 처리 또는 특허분쟁조정을 청구할 때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할한다.
- (2) 둘 이상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모두 관할권이 있는 특허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둘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청구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한다.
- (3)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지정하여 관할한다. 다만,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주의할 점: 행정구제를 청구할 때 침해행위 소재지 또는 가짜제품제조지의 행정기관은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을 받아 권리인이 기대하는 처리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침해행위지와 판매지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판매지가 다른 도시라면 지방보호주의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지에 제소할 수 있다.

나. 고발

I. 권리가 있는 청구인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1	특허권자	
2	이해관계인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상속인
		1)전용실시계약의 피허가인은 단독으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2)배타사용허가계약의 피허가인은 특허권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단독으로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3)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외에 통상실시계약의 피허가인은 단독으로 청구를 제출할 수 없다(특허권자가 권리를 부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 필요한 고발자료	
1	청구서,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위임대리인과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 청구하여 처리할 사항, 사실관계와 이유. 관련된 증거와 증명자료는 청구서 첨부서류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2	주체자격증명,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여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은 유효한 영업허가 증명서 또는 기타 주체자격증명서류의 부분과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증명자의 신분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허권의 유효한 증명, 즉 특허등기부의 부분 또는 특허증과 당 해에 납부한 연차 등록료의 영수증.
비 고	특허침해분쟁과 관련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에 대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산업국이 제작한 특허권평가보고의 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에 따라 청구서 부분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심리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경우,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술심리를 결정한 경우, 최소한 구술심리 3일전에 당사자들에게 구술심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 거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할 경우, 청구인일 경우 청구의 철회로 처리하고, 피청구인일 경우 결석 처리한다. 특허침해분쟁 처리과정 중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증거 조사 및 수집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직권으로 관련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멸실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렵거나 표본을 추출하여 증거 수집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보존등기를 진행하고 7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 수집한 증거가 소멸될 위험이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한다.

- (1)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이 있는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심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특허법 제61조).

라. 분쟁처리 중지

- (1) 특허침해분쟁 처리 시 피청구인이 당해 특허권의 무효를 청구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청구를 접수했을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분쟁 처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2)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분쟁 처리 중지 이유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분쟁 처리를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침해행위에 대한 처리 결정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특허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결정을 하고 침해인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다.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당사자 스스로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안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청구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특허문제를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처리할 경우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인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를 허위표시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를 허위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된 자료조사, 열람 및 복사;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조사, 봉인 및 압류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권리인이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금액은 권리인이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한다(특허법 제65조 제1항).

권리인의 손실, 침해자가 획득한 이익과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1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66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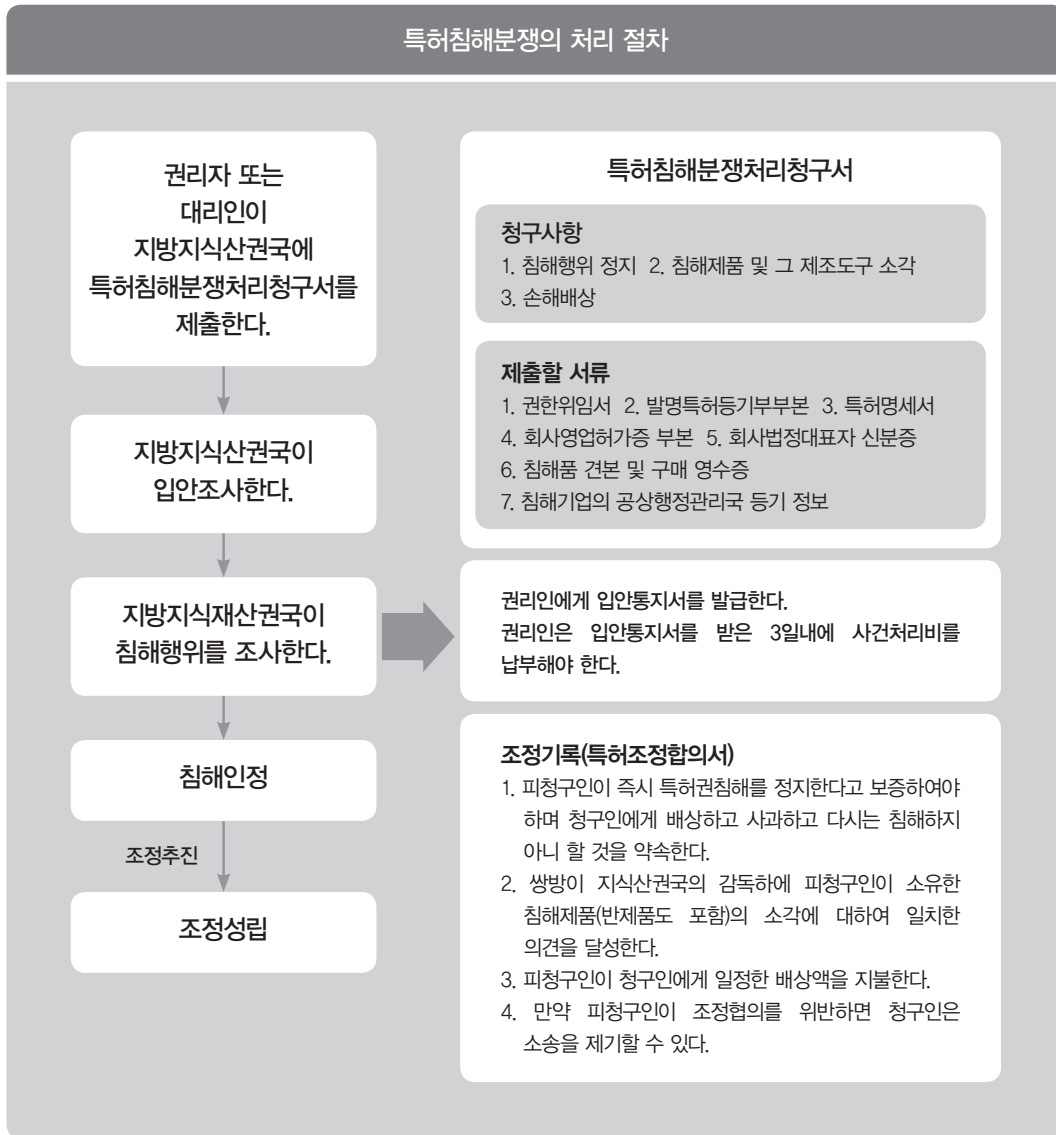
바. 조정제소(申诉调解)

- (1)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청구인은 손해배상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2)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 조정이 성공하면 조정협의를 작성해야 한다(특허법 제60조).

사. 제소 불복 및 강제집행

침해자가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처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인이 기한이 만료되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않을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특허침해 분쟁의 처리 절차



4. 특허를 허위표시한 행위의 처리

가. 특허를 허위표시

특허를 허위표시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특허법 제63조).

아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특허 허위표시행위에 속한다.

- (1) 특허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표시를 표시하거나 특허권무효선고 또는 종료 후에도 계속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표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
- (2) 제(1)항에 기재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
- (3) 제품명세서 등 서류에 특허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하거나 특허출원을 특허로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 (4) 특허증,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 (5) 기타 공중으로 하여금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은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라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

나. 특허허위표시의 처리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허위표시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때 행위인에게 아래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1)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특허표시, 특허권이 무효선고 또는 종료 후 계속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타인의 제품번호를 표기하였을 경우 즉시 표시행위를 정지해야 하며,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또는 포장의 제품표시를 제거해야 한다. 제품의 특허표시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제품 또는 포장을 소각해야 한다;
- (2) 제(1)항에 기재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즉시 판매행위를 정지해야 한다.
- (3) 제품명세서 등 서류에 특허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하거나 특허출원을 특허로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즉시 이 자료의 발급을 정지해야 하고, 아직 발급하지 않은 자료를 소각해야 하며 영향을 소거해야 한다.
- (4) 특허증, 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즉시 위조 또는 변조행위를 정지해야 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특허증, 특허서류 또는 특허신청서류를 소각하고 영향을

소거해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특허행정집행방법 제43조)

다. 행정처벌

- (1) 특허를 허위표시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위법소득의 4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특허법 제63조).
- (2) 위법소득의 확정(특허행정집행방법 제45조).
 - (가) 특허허위표시한 타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가격과 판매한 제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 (나) 특허허위표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취한 비용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 (3) 과태료는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지정한 은행에 처벌결정서에 명시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일 3%의 체납금을 부가한다(특허행정집행방법 제47조).

라. 형사처벌

형법 제216조는 특허허위표시죄, 즉 타인의 특허를 허위표시하여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동시에 또는 별도로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VIII. 특허조사

1. 특허조사의 의의

가. 타인의 특허권 침해 회피

특허조사를 통해 자신의 기업에서 사용한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특허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생산중단,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나. 연구개발을 위한 조사

특허조사는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방향 확정에 도움이 된다.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려 할 경우, 당해 기술에 대하여 타인이 이미 특허권을 취득했다면 동일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당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연구개발자원의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전에 특허조사를 실시하여 동일 분야 기술의 최신 연구동향 및 발전추세를 파악하는 동시에 기업의 연구방향을 명확하게 하여 중점 연구과제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조사수단

가. 특허서류와 등록부의 열람 또는 복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허가를 거쳐 누구든지 이미 공개 또는 공고한 특허출원의 서류와 특허등기부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에 특허등기부 사본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실시세칙 제118조).

나. 중국 특허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조회

중국 특허데이터베이스는 특허의 기본 정보를 검색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이다. 조회방식이 다양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며 효과가 명확하여 기본정보의 검색 및 열람을 충족시킬 수 있다. 검색방식은 주로 수동검색 및 컴퓨터 검색 두 가지가 있으며, 컴퓨터 검색 경로는 선택이 가능하다.

- (1) 국가지식산업국 사이트(www.sipo.gov.cn): 간단한 검색, 고급 검색, 법률상태 등의 검색이 가능. 바이두특허검색사이트(百度专利检索网站,zhuanli.baidu.com): 검색창이 비교적 단일하며 발명명칭 및 전문검색이 가능
- (2) 중국특허정보센터(search.cnpat.com.cn/Search/CN): 사회공중에게 개방한 권위있는 특허검색데이터베이스이며 도표 검색, 고급 검색 등이 가능

다. 중국특허공보 등을 이용한 특허문헌조사

중국특허공보 등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할 수 있으며, 특허공보는 발명특허공보(发明专利公报), 실용신안특허공보(实用新型专利公报) 및 디자인특허 공보(外观设计专利公报) 세 가지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특허문헌이다. 특허공보는 1985년 9월 10일부터 월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부터 국제관례에 의하여 주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요일마다 출판하고 1년에 52기, 매년 1권 출판된다.

특허공보는 중국특허문헌을 찾고 중국 최신 특허정보를 검색하며 중국지재권 특허심사업무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참고자료이다. 특허공보에 기재되는 내용은 제1부분(특허출원과 권리에 관한 공개 또는 공고), 제2부분(특허사무공고의 공개), 제3부분(색인)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중국 지식산업국출판사는 아래 문헌의 DVD도 발행한다.

- (1) 중국특허명세서 전문(1985년 9월 이후의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의 명세서 전문)
- (2) 중국특허데이터베이스(1985년 9월 이후의 특허정보 약 200만 건)
- (3) 중국특허공보
- (4) 디자인특허
- (5) 특허명세서 분류
- (6) 특허복심위원회 결정(1987년-2004년의 특허복심위원회 결정)

라. 외국 특허청에서 공개한 특허정보 조사

기업이 외국시장을 확대하려면 외국의 특허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자사의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관련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그 목적은 기술분야를 선점하여 자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사로부터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세계 각국의 특허데이터베이스는 국가지식산업권국사이트를 방문해 조회할 수 있으며 주소는 www.sipo.gov.cn/sipo2008/xglj/gwzyzscqwz이다.

마. PCT국제특허 조회

어떤 국가를 통하여 출원한 PCT국제특허가 WIPO에 의하여 공개된 후에는 PCT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당해 특허출원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의 분석 및 이용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자사의 기술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기술이 특허등록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해당 기술분야의 수준과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IX. 선용권을 이용한 기술비밀의 도용을 예방

1. 선용권의 의의

만약 회사가 영업비밀로 하여 보호하던 기술이 누설되어 제3자가 특허신청을 하였다면 이 회사는 원래의 범위내에서만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특허법의 '선용권'에 의거하여 보호하려면 당해 회사가 이미 선행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여야하며 사전에 증거를 준비하여야 한다.

주: '선용권'은 특정 기술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미 그 기술을 사용한 회사가 있음을 의미

2. 목적

회사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성과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하여 보호할 수도 있고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였다면 그 기술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타인이 그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술종류에 따라 어떤 기술은 특허출원을 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어 침해받을 위험이 높고 또한 특허침해사실을 쉽게 제시할 수 없다면 (예: 원자료와 관련된 제작기술 등) 특허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기술비밀로 하여 보호할 때 일단 기술비밀이 누설되면 타인이 특허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침해를 주장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사용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특허법의 '선사용권의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선사용권이란 행위인이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기존범위에서만 계속 제조, 사용한다면 그 행위는 특허법 의 규정에 의하면 침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사전에 이 기술을 사용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거의 충분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증처에서 공증을 하여 나중에 특허침해소송을 당했을 때 이를 근거로 선사용권을 주장함으로써 타인의 특허권 침해행위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3. 참고사례

A회사는 모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의 공개를 피하기 위하여 A회사는 이를 기술비밀로 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타인이 이 기술로 특허를 신청한 후 계속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4. 주의사항

항목		확인점
1	회사보유기술로 보호	특허로 보호 또는 기술비밀로 보호
2	기술비밀로 보호	나중에 특허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지의 여부
3	공증 수속 절차	공증의 대상자료는 무엇인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변호사) 공증인원과의 확답, 당지공장에 대한 안내

5. 선용권해석

가. 선용권의 보호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만 계속 제조·사용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특허법 제69조 제2호).

나. 증거보전의 방법

설계도면, 기술자료, 제조설비의 도면, 제조업의 조작일지, 공장변동상황과 관련된 사진과 녹화 등 해당 기술의 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다음, 중국의 공증인을 요청하여 공증날자를 확인하고 공증서를 제작한다. 만약 공증서의 형식이 부정확하여 소송 중 상대방이 관련된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경우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류 등 자료만 공증한다면 공증처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실제적인 기술사용과 제조상황에 대하여 공증한다면 공증인이 생산현장에 방문하여 제조설비에 대하여 녹화하고 생산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증인을 통하여 기술자료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증인원은 직접 기술자료를 접촉하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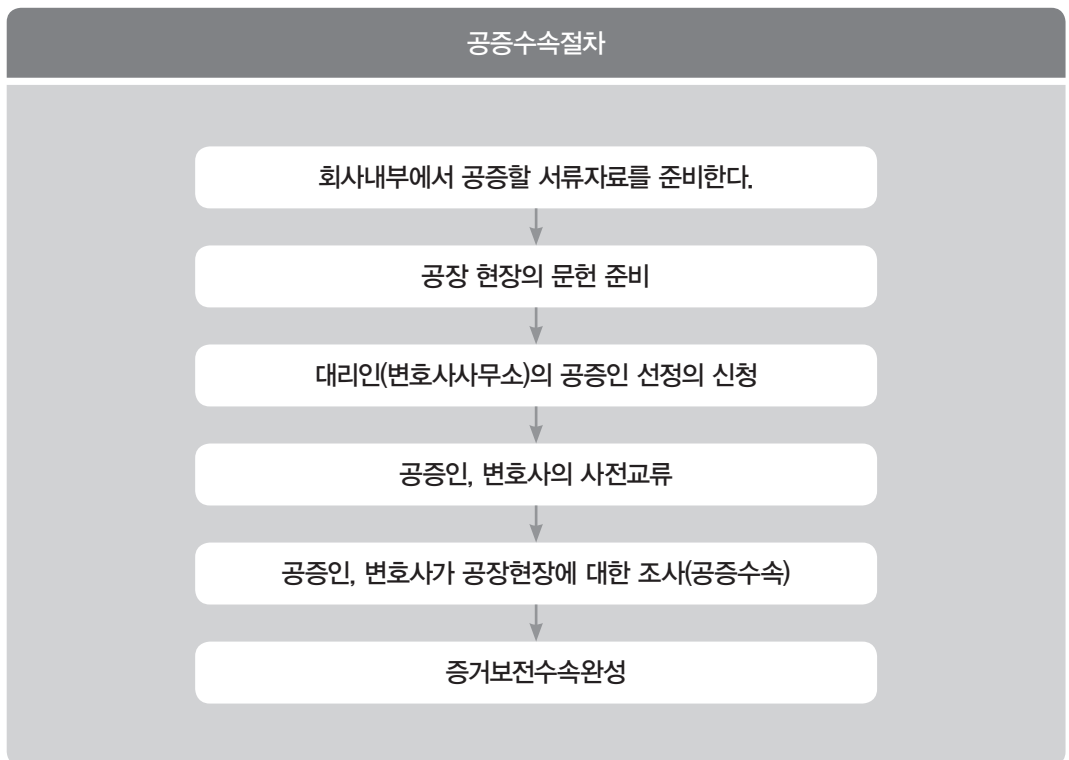
다. 공증진행 시간

특허신청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기존범위에서만 계속 제조·사용한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만약 공장에서 설비의 업그레이드, 추가투자, 생산능력확대 등을 진행하였다면 매번마다 다시 공증하는 것이 좋다.

라. 공증수속절차

회사는 스스로 공증수속을 할 수 있고 변호사사무소에 위탁하여 할 수도 있다. 공증수속절차는 아래와 같다.



실무요점

특허를 신청하는것이 아니라 선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증하는것은 아직 중국에서 드문 현상이므로 중국내에 경험이 풍부한 공증인원이 부족한 편이다. 공증인이 공증할때 실제 공증한 범위와 내용이 실제수요와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 위탁하여 공증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순조롭게 공증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X. 영업비밀 관리

영업비밀은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확실한 운용가능성을 구비하며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제정보이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특허, 상표, 저작권의 공개성과 서로 구별된다. 이는 주요하게 비밀상태 즉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여 가치를 유지한다. 일단 공개되면 정보가 공유영역에 들어가 고유한 가치가 완전 상실된다. 영업비밀은 아래의 정보를 주로 포함한다:

- (1) 기술정보, 그 범위는 주로 기술방안, 공정설계, 회로설계 제조방법, 공예절차, 기술지표, 컴퓨터프로그램 램, 데이터, 실험결과, 설계도, 샘플, 견본기계, 금형, 조작수첩, 기술서류, 영업비밀설계의 업무연락 등을 포함한다.
- (2) 경영정보, 그 범위는 주로 고객명단, 영업계획, 구매자료, 정가정책, 재무보고서, 재무문서, 화물의 소매경로, 제품의 판매전략, 입찰 시의 최저기준가격과 입찰문서 등 내용을 포함한다.

1. 비밀누설의 주요경로

가. 파트너, 주주 등의 비밀누설

회사파트너, 주주 등은 기업 내 지위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더욱 쉽게 장악할 수 있으며 비밀을 스스로 가져가 창업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나. 이직 또는 현직 직원의 비밀누설

기업내부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다. 부당이익의 유혹 하에 직원이 이직한 후 영업비밀을 가져가거나 어떤 직원은 타인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다.

다. 제3자의 부정당한 비밀누설

제3자의 부정당한 비밀누설은 산업스파이, 취재, 참고 등을 포함한다. 취재, 참관 등은 기업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유리하지만 동시에 영업비밀이 폭로되는 중요한 경로이다. 실제로 어느 국가의 공정사가 쇠가루가 잘 묻을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비행기제작공장을 참관하여 금속분말을 획득하여 화학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

라. 공급상, 고객과 수탁가공인의 비밀누설

기업은 항상 제품, 부품, 재료, 생산설비 또는 공예의 기밀정보를 공급상, 고객 및 수탁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 공급상, 고객 및 수탁인들은 해당 기업의 경쟁업체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과도 비즈니스 거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경로에 있는 공급상들이 영업비밀누설의 리스크 원천이다.

마. 폐기되거나 남은 비밀캐리어의 관리 소홀

정규적인 서류 자료 외에 영업비밀은 낱고 폐기된 컴퓨터전자디스크, 폐지, 공업쓰레기 등 낱고 폐기된 캐리어 속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낱고 폐기된 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영업비밀 누설을 초래할 수 있다.

2. 영업비밀의 관리

영업비밀은 기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은 우선 영업비밀 보호조치를 취하여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을 중요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서로 다른 등급별 비밀조치를 취함으로써 각 등급별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구분하여야 한다. 비밀과 관련된 인원을 분류하고 그들이 영업비밀에 접근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더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비밀유지규정

합리적인 규정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완전한 비밀유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이 특정된 환경에서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직접적 표현이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은 기업영업비밀의 범위, 영업비밀관리기구와 담당 직원, 영업비밀의 비밀유지 의무, 영업비밀서류관리, 폐기된 서류,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제도, 영업비밀의 신고와 심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물리적 보호조치

물리적 보호조치는 주로 회사안전계통부터 착수하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통정보와 비밀정보를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 절대적인 비밀, 기밀, 비밀등급을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 열쇠를 잠그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접속을 통제하여야 한다.
- 중요한 데이터에는 암호를 설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 방문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 이직자로부터 영업비밀과 연관된 서류와 영상자료 등 매개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 외부인원의 공장참관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폐기된 쓰레기 등을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비밀서류관리

영업비밀서류는 문자, 도표, 음향 및 기타 기록형식으로 영업비밀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이런 영업비밀서류는 반드시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서류의 비밀등급의 구분과 표시

영업비밀에 속하는 서류에 대하여 비밀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통일적인 표시를 한다. 예를 들어, ‘절대 비밀’, ‘기밀’, ‘비밀’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서류 제1면에 동일한 글씨체의 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2) 영업비밀서류의 수발관리

비밀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등록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매 서류마다 번호, 건수, 제작 날짜를 주석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밀과 관련된 서류가 수발과정에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영업비밀서류의 보관

영업비밀서류는 반드시 일정한 보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서류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밀서류는 등급에 따라 금고와 보통서류함 등으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사업적 수요에 따라 개인이 보관하게 되는 상업서류문서는 심사비준권한이 있는 주관 상사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문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영업비밀서류의 검열과 복제

영업비밀서류의 열람권한에 대하여 구분하여야 하며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은 최소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절대 비밀 서류는 비밀유지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음대로 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업비밀서류에 대한 복제는 관련된 심사비준수속을 거쳐야 하며 규정된 장소에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5) 영업비밀서류의 소각

불필요한 영업비밀서류는 관련된 소각절차를 마련하여 소각하되, 소각기록을 하여야 한다.

라. 비밀유지협약

비밀유지규정은 기업 스스로의 요구이고 비밀과 연관된 임직원과의 합의가 아니므로 보다 엄격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외에 아래와 같이 임직원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직원과의 비밀유지협약

비밀유지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비밀의 정의, 범위; 2) 비밀유지기한; 3) 쌍방의 의무; 4) 비밀유지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
비밀유지협약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체결하여야 하며, 근무 중 또는 이직 시에 보충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 그 밖에 기술도입협상에 참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부 특수상황에 따라 임직원과 그에 상응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공급상, 고객 및 수탁자 등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약

기업경영의 필요에 따라 외부인이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들 제3자와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협약을 체결하는 사실 자체로 기업이 영업비밀소유자로서 영업비밀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률상 제3자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 (나) 공개할 영업비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 (다)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 (라) 제3자가 본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경우 부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 (마) 상대방 회사가 이 영업비밀에 접촉하는 직원과 개인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 (사) 관련된 기구와 인원에게 비밀유지협약 이행요구서를 제출한다.
- (아) 위약금을 약정한다.
- (자) 상대방이 사업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마. 경쟁제한협약

비밀유지협의를 체결하는 것 외에 회사의 중요한 기술비밀, 경영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임직원과 경쟁제한협의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계약, 지재권 귀속협약 또는 기술비밀유지협약에서 약정한 경쟁제한조건을 말한다. 즉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중지 또는 해제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기타 경쟁관계의 기업에 취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원 고용기업과 경쟁관계가 있는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기간은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정하지만 2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계약법은 고용기업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계약 또는 비밀유지협의로 경쟁제한협의를 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이 제한된 직원은 고용기업의 고급 관리직원 및 기술직원과 기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직원에 한한다. 경쟁제한의 범위·지역 및 기한은 기업과 노동자가 약정하며 경쟁제한의 약정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경쟁제한조건을 약정할 때 구체적인 위약책임의 부담 방식 및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노동계약해지의 통보기간을 약정해서는 안된다.

경제보상

기업이 노동자와 경쟁제한계약을 체결하면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은 상응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경쟁제한기간 내 매달 노동자에게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 퇴직직원이 경쟁제한약정을 위반하면, 약정에 따라 기업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퇴직직원은 적성에 맞는 전업 또는 숙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에 수입 또는 생활의 질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고, 기업은 퇴직직원이 당해 업종의 노동 또는 경쟁에 참가하지 않는 원인으로 일시적 또는 잠재적으로 상응하는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보상은 쌍방이 계약에서 보상액 또는 계산방식, 지급방식 등을 확정해야 한다.

보상표준

경제보상의 표준금액에 대하여 노동계약법은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약정해야 한다. 중국의 각 지역에서 규정한 최저 보상표준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심천경제특구 기업 기술비밀보호조례(深圳经济特区企业技术秘密保护条例) 제17조는 “경쟁제한협약에서 약정한 보상금액은 연도에 따라 계산하고, 당해 직원이 퇴직하기 전 최종 1년 간 당해 기업에서 수령한 보수총액의 2/3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경쟁제한협약에 보상금액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최저 표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해시의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

(企业技术秘密保护条例)는 “기업과 직원이 경쟁제한을 약정하면 경쟁제한기간에 연 보상액은 당해 직원이 전 1년 당해 기업에서 수령한 연 보수총액의 1/2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노동계약 또는 비밀유지계약의 유효한 전제결정조건은 고용기업이 반드시 보상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은 선 이행 항변권(先履行抗辩权)에 의하여 동업 경쟁제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파시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企业技术秘密保护条例)는 “기업은 제한을 받는 직원에게 보상해야 하며 연 보상비는 당해 직원이 사직 당시 1년 전 보수 총액의 1/2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적근거

가.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제23조 및 제24조

나. 회사법(公司法) 제149조 제5항(이사장, 고급 관리직원은 주주회의 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회사의 영업기회를 도모하게 해서는 안되며,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동종 업무를 본인이 경영하거나 또는 타인이 경영하게 해서도 안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제10조는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2)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3)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라. 계약법(合同法) 제7조의 계약체결이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은 비밀유지협약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기도 하며, 동법 제43조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은 누설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누설 또는 부정사용이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고 규정

마.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 제66조는 “영업비밀과 관련 되는 것을 법정에서 제시해야 한다면

공개재판에서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는 “영업비밀과 관련되는 사건을 당사자가 비 공개심리를 청구하면 공개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

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사.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 제28조는 일부분의 주체에 대하여 비밀 유지의무를 규정.

아. 민법통칙(民法通则)에 의하여 권리자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받을 경우 법원에 소송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 중지와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영업비밀침해죄를 구성할 경우 형법(刑法) 제219조에 의하여 침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규정

자. 1997년3월14일에 수정한 형법 은 영업비밀침해죄를 전문적으로 규정

4.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조건

가. 영업비밀의 필요조건(인정조건)

(1) 영업비밀의 개념(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3항):

- (가) 공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해야 한다(비밀성, 독자성).
- (나) 권리자에게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가치성).
- (다) 확실한 운용가능성을 구비해야 한다(산업상 이용가능성).
- (라) 권리자가 비밀유지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제정보(비밀유지성).

(2) 비 공개성(비밀성, 독자성)

비공개성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된 경로로부터 직접 획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영업 비밀이 일단 공개되면 그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된다. 사후적인 손해배상은 손해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없다.

비밀성		
1	비밀의 주관성	소유자는 주관적으로 비밀유지의 의지가 있으며 적정의 비밀유지조치를 강구
2	비밀의 객관성	비밀이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독자성〉

일정한 수준의 독자성을 구비하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 상식·특정 업계 또는 전문가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타인이 파악하여 경제적 이익을 따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면 영업비밀에 속한다.

(3)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 도모(가치성)

경제적 가치란 권리자에게 현실적·잠재적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인 비밀(군사기밀, 개인의 사생활 등)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만약 영업비밀 소유자 자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찰해도 실용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으면 비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영업비밀의 가치란 영업비밀의 사용을 통해 산업상 경쟁우위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한다.

(4) 확정적 이용가능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영업비밀은 생산 및 경영에 운용되고 적극적인 효력을 발생하며 현실적 또는 잠재적 영업가치를 구비하고 권리자에게 경쟁우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비밀소유자는 구체적 내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5) 권리자의 비밀조치(비밀유지성)

영업비밀 소유자가 영업비밀에 적당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중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는 주관적 비밀성이 없는 정보가 된다. 따라서 영업비밀 소유자는 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비밀조치를 취한 사실의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밀유지 조치형식	
1	업무직원은 비밀유지를 약정해야 함
2	관련되지 않는 직원의 영업비밀장소 출입을 제한
3	각 종 비밀유지규칙 및 비밀자료 분류표준 제정
4	각 종 비밀누설방지 설비 정비

나. 영업비밀의 종류

기술정보	경영정보
기술지식	관리와 관련한 정보
제조기술, 설계방법, 생산계획, 제품의 품격, 연구방법, 조작절차, 기술표준, 조작기술, 기술수준평가의 지식, 경력, 기술저력, 기술서류, 도면, 모델, 샘플, 데이터, 컴퓨터프로그램 등.	제품판매계획, 제품판매상황, 제품판매지역 분포, 고객명세서, 기업전략, 광고계획, 원자재가격, 소매경로, 유통채널, 공급기업명세서, 가격, 자산구입계획, 투자계획, 관리모델, 관리경력과 광고활동, 비밀조직과 관리생산 등.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침해행위 종류(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3조).

1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라. 침해행위 성립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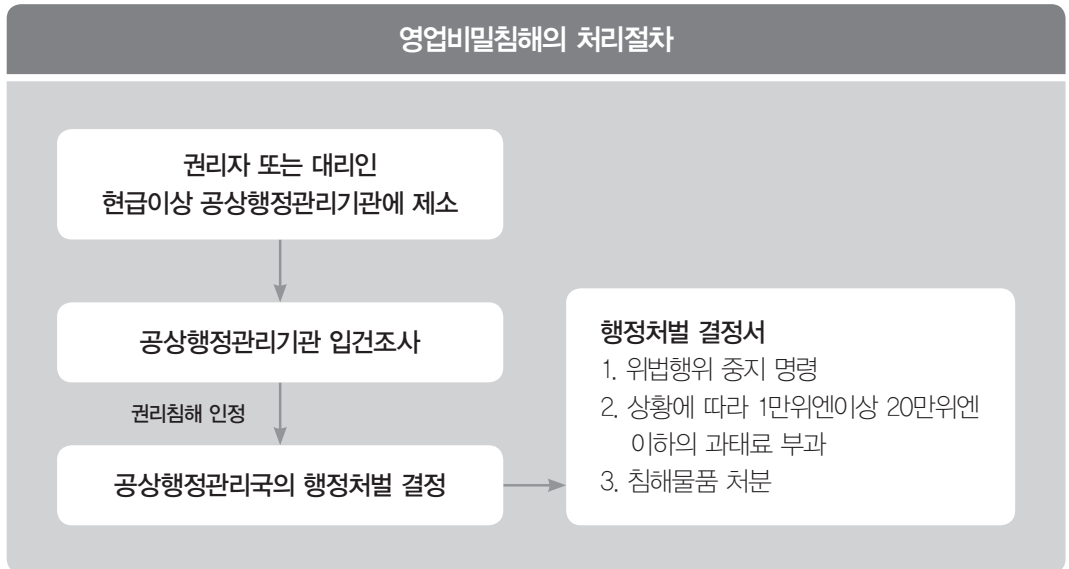
1	영업비밀침해의 주체: 기업내부의 업무직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기업외부의 업무직원 또는 합작측 외의 제3자 등
2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의향이 존재
3	행위자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실행
4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영업비밀의 권리자에게 손실을 초래
5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권리자의 손실간에 인과관계가 존재

5. 영업비밀침해의 처리절차

영업비밀침해구제에 대한 주요 법적근거는 반부정당경쟁법,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정 이다.

피신청인이 위법으로 영업비밀을 공포, 사용, 타인의 사용을 허락하여 권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권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권리인이 자발적으로 강제조치의

사후결과를 책임진다는 서면보증을 제출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신청인이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정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정 제6조).



기타 행정처벌규정:

1. 침해자에게 영업비밀이 수록된 도면·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 및 감독
2.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건이 시장에 유입되어 장래에 영업비밀의 공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폐기를 감독. 다만, 권리자가 구입 또는 판매 등 기타 처리방법에 동의할 경우 예외로 한다
3. 침해자가 처벌결정의 집행을 거부하고, 본 규정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병과하여 처벌한다.
4.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로 인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6.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처벌

가. 기업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 감독검찰부서는 위법행위를 정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1만위엔 이상 20만위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반부정당경쟁법 제 25조,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정 제7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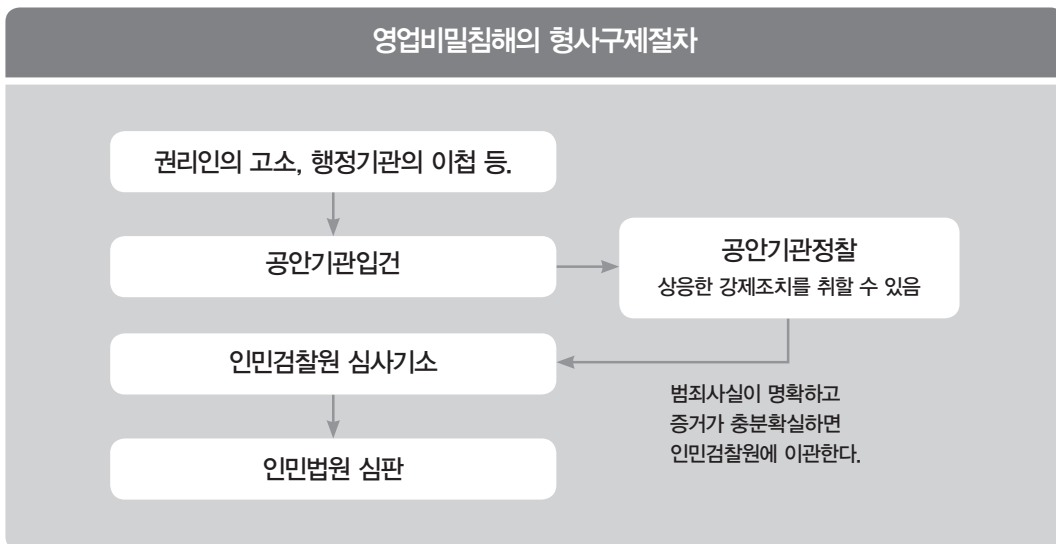
나.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침해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정 제7조 제2항).

- (1) 침해자가 영업비밀이 기재된 도면, 소프트웨어 및 기타 관련된 서류를 권리인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2) 침해자가 권리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시장에 유통되어 영업비밀의 공개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의 소각을 감독한다. 그러나 권리인이 구입 또는 판매 등 기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침해자가 처벌결정에 따르지 않고 계속 본 규정 제3조에서 열거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로 인정하며 병과하여 처벌한다(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정 제8조).

라. 권리인이 손해배상문제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요구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권리인은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규정 제9조).

7. 영업비밀침해의 형사구제절차



XI. 전시회 기간의 특허보호

1. 전시회의 고발기관에서 지방지식산업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지방지식산업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전시회지식산업보호업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지방지식산업국이 전시회 기간에 수행하는 업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특허법률법규의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전시회의 고발기관에서 이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고소를 처리한다.
- 나. 특허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된 항목이 특허권침해혐의가 있다는 특허침해분쟁처리청구를 접수한다.
- 다. 전시된 항목이 특허허위표시의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전시된 항목 중 특허허위표시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특허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아래의 사항 중 하나일 경우 지방지식산업국은 특허권침해의 고소 또는 처리청구에 대하여 접수하지 않는다:

- 가. 고소인 또는 청구인이 이미 인민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 나. 특허권이 무효심판 청구절차에 있을 경우.
- 다. 특허권의 권리귀속 분쟁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의 심리절차 또는 특허업무관리부서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라. 특허권이 이미 종료되어 특허권자가 권리회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3. 지방지식산업국이 피고소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때,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즉시에 실행할 수 있고,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조사·열람 및 복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심문 및 촬영·녹화 등의 방식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표본을 수집할 수도 있다(전시회지식산업보호방법 제18조 제1항).

4. 지방지식산업국이 증거를 수집할 때 기록부를 제작하여야 하며 사건 처리 담당자 및 증거수집 시 조사받은 당사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증거수집 시 조사받은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기록물에 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현장에 기타 사람이 있는 경우 기타 사람이 서명·날인할 수 있다(전시회지식산업보호방법 제18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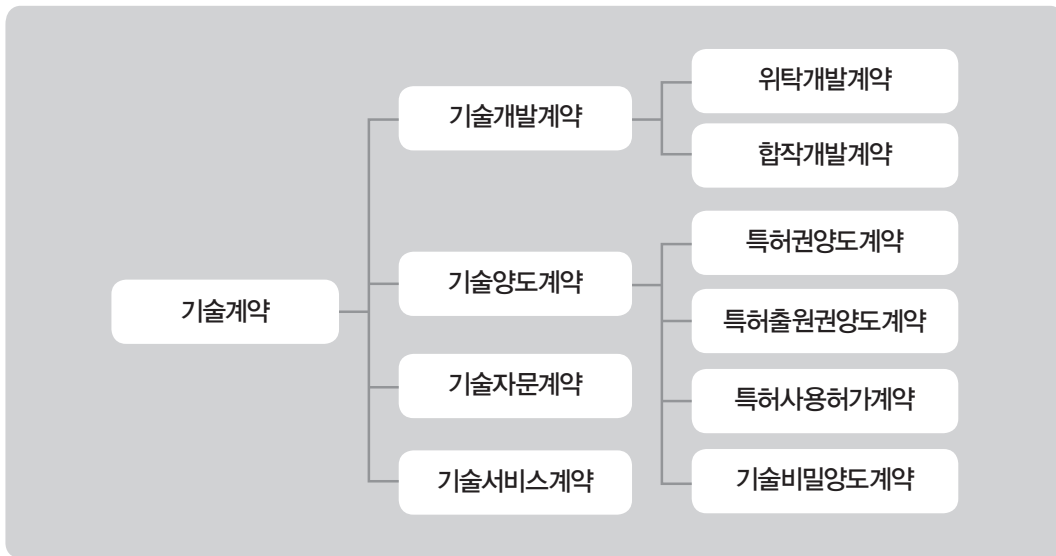
제 2 부

기술계약



I. 기술계약

1. 기술계약의 종류



중국계약법은 기술계약에 대해 4가지 계약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술개발계약, 기술양도계약, 기술자문계약과 기술서비스계약이다(계약법 제322조).

만약 기술계약이 특허기술의 양도와 관련되어 있다면 특허출원권양도계약, 특허권양도계약, 특허사용허가계약 등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비특허기술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기술비밀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술계약은 특허법 등 관련된 지식산업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기술계약에 상표권과 저작권의 거래가 연관되어 있다면 실제수요에 따라 상표권양도계약, 상표사용허가계약, 저작권허가계약, 저작권사용허가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시에 계약은 상표법 과 저작권법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률법규

1987년과 1989년에 중국은 기술계약법(技术合同法), 기술계약법실시조례(技术合同法实施条例)를 각각 제정하였으나, 1999년 계약법(合同法)이 제정되어 동법 제18장 ‘기술계약’에 편입되었다. 그 후 2004년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법원 지재권 심판업무의 기술계약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의 기요(全国法院知识产权审判工作会议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若干

问题的纪要)와 기술계약분쟁사건 심리적용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을 제정하였다.

기술계약인정등록관리방법(技术合同认定登记管理办法, 2000년), 기술계약인정 규정(技术合同认定规则, 2001년), 특허사용허가계약등기관리방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管理办法, 2001년),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설립 관련 문제의 통보(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2001년), 기술수출입관리조례(技术进出口管理条例, 2001년), 기술수출입계약등기관리방법(技术进出口合同登记管理办法, 2009년 시정)

3. 중국계약법의 내용

계약법은 기술계약의 내용, 효력, 취소, 당사자의 권리의무, 발명성과의 귀속,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중 직무발명은 특허법 과 특허법실시세칙 에서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계약법은 계약자유원칙(제4조), 공평원칙(제5조), 신의성실원칙(제6조), 공서양속원칙(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은 계약자유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는 사항(임의약정사항)과 자유로이 약정할 수 없는 사항(강제규정사항)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일부 기술계약은 계약법에 규정된 네 가지 유형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술도입계약(技术引进合同), 기술원조계약(技术援助合同) 등의 계약은 제목이 기술계약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합작영업, 합작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단지 기술거래에 관한 사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도 계약법 및 관련 사법해석, 기술계약인정등록관리방법, 기술계약인정규칙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4. 계약형식

기술계약은 반드시 서면형식이어야 하며(계약법 제330조, 제342조), 기술계약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여러 가지 기술계약양식을 제공하여 당사자 쌍방이 참고하게 하고 있으나, 계약의 각 조항은 계약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두형식의 기술계약은 기술계약등록기관에서 접수하지 않는다(기술계약인정등록관리방법 제9조).

5. 출원인정등록

과학기술부는 전국의 기술계약인정등록업무를 관리하며, 성·자치구·직할시 및 중앙 직속

계획도시 과학기술행정부서는 자기 관할구역의 기술계약인정등록업무를 관리한다. 지급도시, 시, 구, 현 과학기술행정부서는 기술계약등록기관을 설립하여 기술계약의 인정등록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기술계약인정등록관리방법 제3조).

인정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절한 기술계약은 국가의 관련 과학기술성과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금, 대출, 장려 등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인정등록을 거친 기술계약은 당사자가 인정등록증명서를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면 심사허가를 거쳐 국가에서 규정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술계약인정등록관리방법 제6-7조).

기술계약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계약서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인정한다. 주요심사 사항은 ①기술계약에 속하는지 여부 ②분류등록 ③기술적 수익 심사결정(기술계약 인정등록관리방법 제13조) 등이다.

기술계약등록기관은 인정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등록사항의 인정을 완료해야 한다. 기술계약등록기관은 등록조건에 부합되는 계약은 인정한 후 분류하여 등록하고 서류를 보존하며 당사자에게 기술계약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심사 결정한 기술적 소득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비 기술계약 또는 등록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등록하지 아니하며 계약서에 '등록거절(未予登記)'이라 명시하고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기술계약인정등록관리방법 제14조).

당사자는 기술계약등록기관의 인정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재심의법(行政復議法)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기술계약인정등록관리방법 제16조).

6. 기술계약 인정 등록시 주의사항

가. 계약이 기술계약인지 여부

기술계약이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에 계약법(國合同法) 제18장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자문과 기술서비스 활동에 대하여 체결한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확립한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법 규정의 기타 계약은 기술계약으로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 대상물에 기술개발·양도·자문 또는 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 당해 기술거래부분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동시에 계약당사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단독 체결계약에 대하여 인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기술계약인정규칙 제4조 및 제5조).

기술을 지분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기술양도계약에 의하여 인정등록을 할 수 있다. 기술개발·양도·자문 또는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기술도급계약은 도급항목의 성질과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근거하여 계약유형을 확정하는 동시에 인정등록을 한다(기술계약인정규칙 제6조).

나. 서명날인 결여

인정등록을 출원한 기술계약은 법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발생한 계약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시 성립하고, 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허가·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당해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후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특허출원권양도계약, 특허권양도계약 등이다.

당사자가 법인인 기술계약은 당사자의 법인대표 또는 당사자가 위임한 직원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동시에 법인의 직인 또는 계약전용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자연인인 기술계약은 자연인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타 조직인 기술계약은 당해 조직의 책임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동시에 조직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인감을 완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인감이 서명한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록하지 아니한다(기술계약인정규칙 제8조).

다. 주요 조항이 명확한지 여부

인정등록을 신청한 기술계약에 아래 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록거절한다.

- ① 계약의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계약의 목적물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등록직원이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③ 계약대금, 보수, 사용료 등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기술계약인정규칙 제15조).

담보조항(계약금, 저당, 보증 등)을 약정하는 동시에 이것을 계약성립조건으로 하는 기술계약은 인정등록 신청 시, 당사자가 담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기술계약인정규칙 제16조).

라. 계약명칭의 일치성 요구

인정등록을 신청한 기술계약의 계약명칭이 계약에서의 권리의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기술계약등록기관은 당사자에게 보충수정 후 인정등록을 재 신청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보충수정을 거절하면 등록을 아니한다(기술계약인정규칙 제17조).

마. 불합리한 제한조건의 유무

인정등록을 신청한 기술계약의 조항에 아래의 불법 독점기술, 기술진보 방해 등의 불합리한 제한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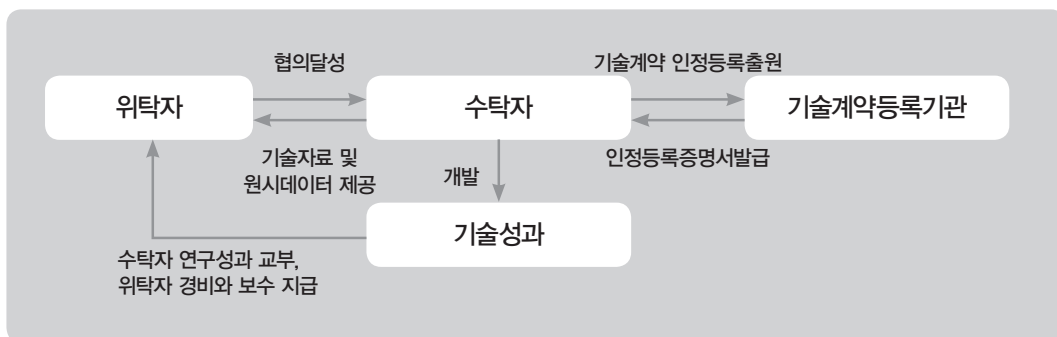
- (1) 일방이 다른 일방의 계약목적물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경우
- (2) 일방이 다른 일방의 계약목적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과학기술성과 및 그 지재권을 독점 회수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 (3) 일방이 다른 일방의 기타 경로에 의한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경우
- (4)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시장경쟁요구에 근거한 특허사용과 기술비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기술계약인정규칙 제18조).

II. 기술개발계약

기술개발계약은 당사자간 신기술·신제품·신공예 또는 신재료 및 그 시스템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계약법 제330조). 기술개발계약은 위탁개발계약과 공동개발계약 두 가지를 포함하며, 서면형식으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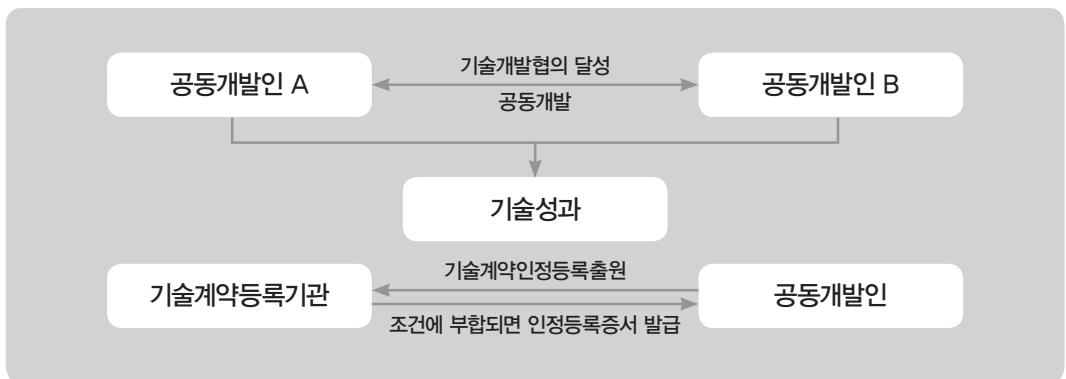
1. 위탁개발계약

위탁개발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연구개발자)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탁개발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급하고, 기술자료 및 원시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계약법 제331조).



위탁자의 의무 (계약법 제331조)	①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경비와 보수를 지급 ②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 및 원시데이터를 제공 ③ 협력사항을 완성 ④ 연구개발성고를 접수
수탁자의 의무 (계약법 제332조)	① 약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및 사용 ② 연구개발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 ③ 기한 내에 연구개발을 완성하고, 연구개발성고를 교부해야 하며, 관련 기술자료와 필요한 기술지도를 제공하여 위탁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위약책임 (계약법 제333, 334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업무가 지체·연기 또는 실패했을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개발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기술개발계약을 말한다.



공동개발자의 의무	약정에 따라 기술투자를 포함한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업무에 분담하여 참여하고 연구개발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계약법 제335조).
위약책임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업무가 지체·연기 또는 실패했을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계약법 제336조).
특별 해지조항	기술개발계약 목적물 기술이 이미 타인의 공개로 인하여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이 의미가 없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법 제337조).

3. 기술개발계약의 위험부담

기술개발계약 이행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기술문제가 출현하여 연구개발이 실패 또는 부분 실패를 초래할 경우, 당해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보충협의를 하거나 계약의 관련 조항과 거래관습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위험책임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당사자 일방은 연구개발 실패 또는 부분실패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다른 일방에게 통보하고 손해를 감소시키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시에 통보하지 않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계약법 제338조).

4. 기술개발성과의 귀속

가. 위탁개발계약

개발을 위탁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연구개발자에게 속하고,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위탁자는 무료로 당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위탁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 양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계약법 제339조).

나. 공동개발계약

공동으로 개발을 완성한 발명창조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개발을 합작한 당사자가 공유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공유하는 특허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기타 상대방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권리가 있다. 개발을 합작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공유하는 특허출원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다른 일방은 단독으로 출원하거나 기타 상대방과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특허출원권을 포기한 일방은 무료로 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개발을 합작한 당사자 일방이 특허출원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방 또는 기타 상대방은 특허를 출원할 수 없다(계약법 제340조).

다. 기술비밀성과의 귀속

개발을 위탁 또는 개발을 합작하여 완성한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양도권 및 이익의 분배방법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보충협의를 하거나 계약의 관련 조항과 거래관습에 의하여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모두가 사용 및 양도할 권리가 있으나, 개발을 수탁한 연구개발자는 위탁자에게 연구개발성과를 교부하기 전에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계약법 제341조).

Ⅲ. 기술양도계약

1. 기술양도계약의 종류

기술양도계약은 특허권 양도, 특허출원권 양도, 기술비밀 양도 및 특허실시허가계약을 포함 하며, 서면형식으로 해야 한다(계약법 제342조).

특허권 양도계약	일방 당사자(양도인)가 자신의 특허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에 대한 비용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특허출원권 양도계약	일방 당사자(양도인)가 자신의 특허출원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에 대한 비용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특허실시허가계약	일방 당사자(양도인,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권리를 부여한 자)가 양수인에게 약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고 양수인은 이에 대한 실시료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기술비밀 양도계약	일방 당사자(양도인)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비밀을 양수인에 제공 및 당사자간 기술비밀사용권 및 양도권을 명확하게 하고, 양수인은 이에 대한 비용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기술계약인정규칙 제25조).

2. 기술양도계약의 인정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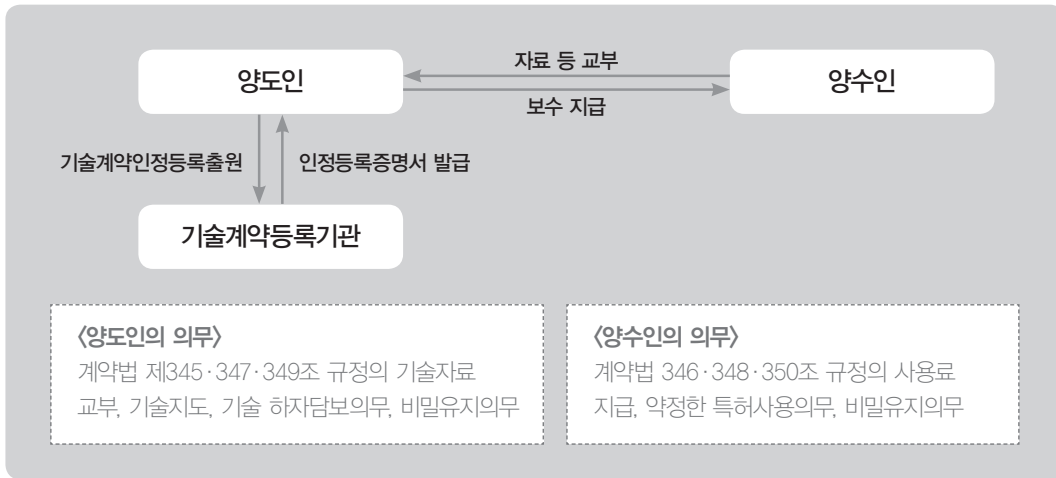
가. 계약목적물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이미 파악한 기술성과이며 특허·기술비밀 및 기타 지재산 성과를 포함한다.

나. 계약목적물은 완전성과 실용성을 구비하고 관련 기술내용은 제품, 공법, 재료, 품종 및 개선기술방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명확한 지재산 귀속 약정이 있어야 한다(인정규칙 제26조).

3. 기술양도계약의 합작절차

기술양도계약은 당사자가 기술양도를 목적물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다. 양도하는 기술대상은 중국에서 보호를 받는 발명특허권과 비 특허기술(기술비밀) 등이다.



가. 양도인의 위약책임

양도인이 약정에 의한 기술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료의 부분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약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거나 또는 당해 기술비밀을 사용하게 한 경우, 계약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약정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계약법 제351조).

나. 양도인의 보증책임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자신이 제공한 기술의 합법적 소유자라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제공하는 기술이 완전하고 착오가 없으며 유효하여 약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계약법 제349조).

다만, 양수인이 관련 설비장치, 재료조건, 기술수준 등을 구비하지 못하여 약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양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특허실시 또는 기술비밀사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아직 시용단계에 있는 기술성과를 양도하려면 양도인은 반드시 일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기술을 사용한 후 약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양수인이 대량 생산을 실행하기 전에 소규모 시험, 중규모 시험, 공업성 시험에 당해 기술은 사용하도록 약정해야 한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량생산 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제3자에 대한 책임

양수인의 약정에 의한 특허의 실시 또는 기술비밀의 사용이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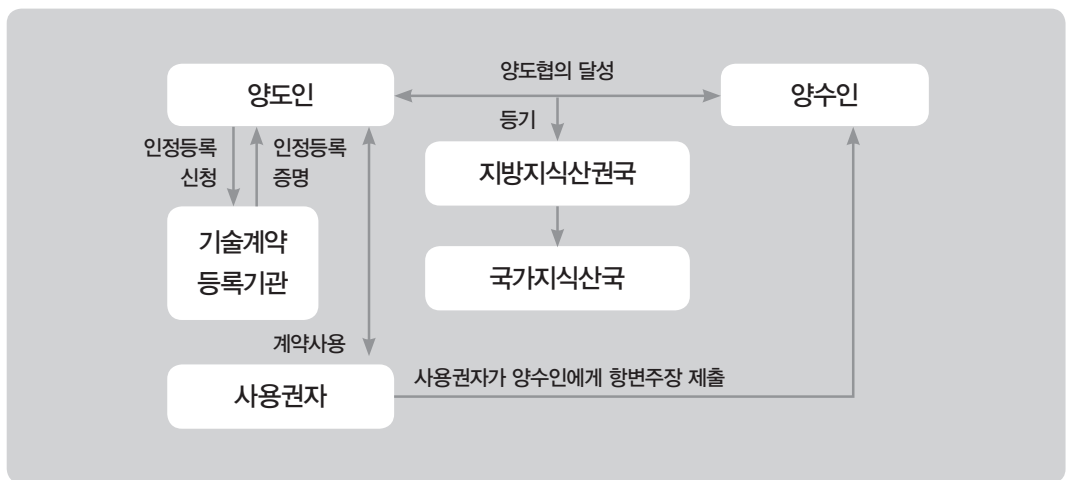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계약법 제 353조).

4. 특허권양도계약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속을 밟아 처리해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登記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0조).

특허권 양도계약에는 일반적으로 ①계약명칭 ②발명성과의 명칭과 내용 ③출원일자, 출원번호, 특허번호, 유효기간 ④특허 실시 및 실시허가 상황 ⑤특허정보자료 ⑥계약대금 지급방식 ⑦위약금 및 손실배상 방식 ⑧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상무부) 및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의 공동으로 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특허법 제10조, 특허법실시세칙 제14조).

5. 특허출원권 양도 계약

특허출원권 양도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의 특허출원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대응되는 계약대금을 수취하는 계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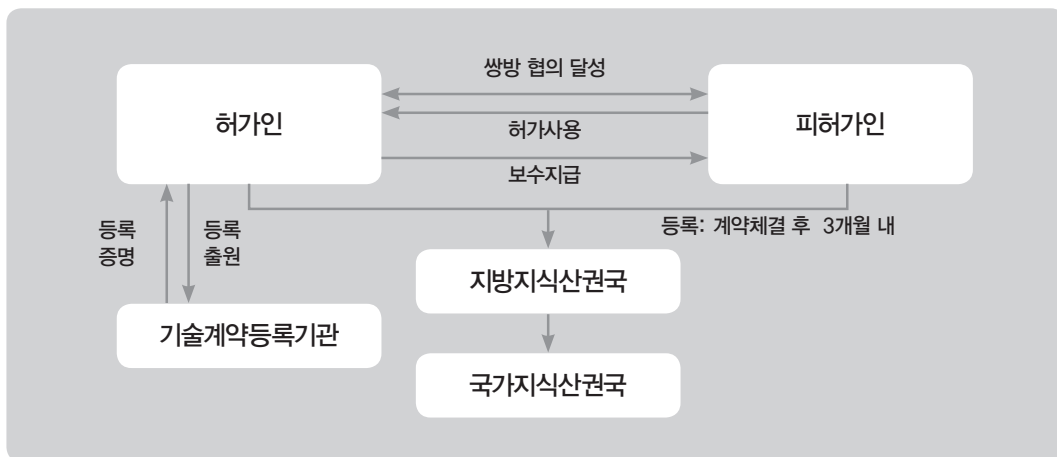
특허출원권의 양도는 특허권의 양도와 같이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특허출원권의 양도의 효력은 특허행정주관부서(국가지식산업국)에 등록한 날부터 발생한다(특허법 제10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상무부)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특허법실시세칙 제14조).

6. 특허실시허가계약

가. 특허실시허가계약

특허실시허가계약은 허가인, 즉 특허권자가 피허가인에게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1) 계약의 형식과 내용

(가) 계약형식

특허실시허가계약은 서면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두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계약법 제342조)이다.

(나) 계약주요내용

특허권실시허가계약에는 일반적으로 ①서언, 서론, 계약제목, ②당사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③특허의 명칭, 번호, 출원일, 등록일, ④관련 용어의 정의, ⑤계약유효기간, ⑥실시허가범위(지역범위, 시간범위, 유형), ⑦특허실시의 구체적 방법 및 요구, ⑧관련 특허기술자료의 제공 및 기술지도, ⑨특허실시로 및 지급방식, ⑩개량기술성과의 귀속, 특허권의 보호 및 보증, 비밀유지의무, ⑪특허계약의 무효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처리, ⑫ 위약책임, 불가항력 및 기타 쟁의해결 관련 사항, ⑬특허표지의 제공방식, ⑭ 특허제품의 품질보증과 감독, ⑮원산지 표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 특허실시료의 지급방식

동일 특허권에 대한 실시허가료는 허가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독점허가, 배타허가, 보통허가의 순서에 따라 점차 낮아지며 실제 평가 시, 아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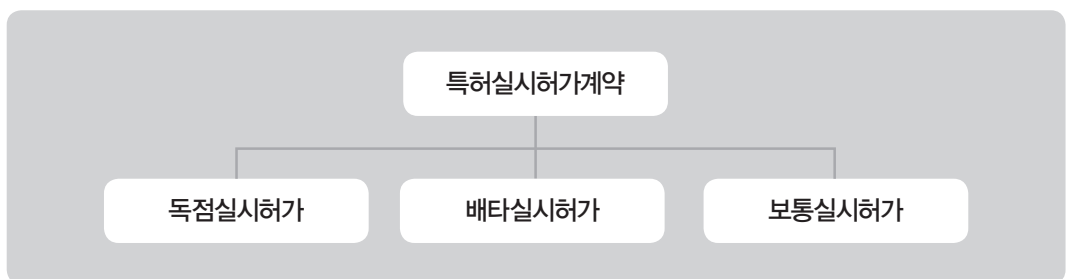
① 연구개발비용 및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비용 ② 피허가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③ 특허허가의 유형 및 기한 ④ 지급시간 및 지급방식

(라) 쌍방의 의무

① 피허가인은 반드시 특허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②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특허를 실시하여 제조하는 제품의 품질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③ 당해 특허를 사용하여 제조한 특허제품은 상품명칭, 피허가인의 명칭, 생산주소 등 정보가 구비되어야 한다.

(2) 계약의 종류

특허실시허가계약은 아래의 세 가지 종류[기술계약사법해석(技術合同司法解釋) 제25조]가 있으며, 피허가인이 취득한 특허실시권의 범위 및 피허가인이 향유하는 권리에 따라 특허실시허가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전용 실시(独占实施许可)

전용실시(‘독점허가’라고 약칭)는 일정한 시간 및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가 1인의 피허가인에게 자신의 특허권 실시를 허락하고 동시에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를 실시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한다. 전용실시에서 피허가인의 지위는 특허권자와 비슷하다. 전용실시의 피허가인은 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고 특허권자의 실시행위를 배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고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소송 전 임시조치의 강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실시허가보다 실시료가 매우 높다. 지역과 시간범위를 한정하면 당해 제한구역 외 또는 허가기한 제한이 만료한 후, 특허권자는 여전히

특허권을 향유한다.

(나) 배타실시허가(排他実施許可)

배타실시허가(‘배타허가’라고 약칭)는 독가허가(獨家許可)라고도 부르며 일정한 시간 및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가 하나의 피허가인에게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며 특허권자 자신도 당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배타허가와 독점허가의 구별은 배타허가에서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향유하지만 독점허가에서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독점허가보다 낮으며 보통허가보다는 높다.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특허권자가 소송 전 침해금지를 청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타허가의 피허가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 통상실시(普通實施許可)

통상실시(‘보통허가’라고 약칭)는 일정한 시간 내에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동시에 제3자에게도 당해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동일 지역 내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피허가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허권자 자신도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보통허가는 특허실시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유형이다. 보통허가의 피허가인이 원고로서 권리침해소송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실시허가계약의 구체적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라) 분실시허가(分實施許可)

분실시허가(‘분허가’라고 약칭)는 상술한 실시허가를 기초로 한 허가이며 피허가인이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피허가인이 권리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허가인의 신분으로 다시 제3자에게 동일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면 피허가인과 제3자간의 실시허가가 바로 분허가로 된다. 피허가인이 이 같은 분허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분허가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 분실시허가계약의 기간, 지역범위 및 실시방법은 원 실시허가의 기한, 지역범위와 실시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원 실시허가의 기한, 지역범위와 실시방법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에는 권리침해행위로 인정된다.

(마) 교차실시허가(交叉實施許可)

교차실시(‘교차허가’라 약칭)는 호환실시허가(互換實施許可)라고도 부르며 두 특허권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허가에서 양자의 특허가치는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실시료를 서로 면제한다. 그러나 양자의 기술효력 또는 경제효율 상 격차가 비교적 클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적정의 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교차허가의 성질은 보통허가일 수도 있고 독점허가 또는 배타허가일 수도 있다.

나. 특허실시허가계약의 신고·등록 및 공고

특허실시허가의 신고는 주로 특허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专利实施许可合同备案管理办法)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에 의하여 진행된다.

(1) 등기

당사자는 특허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특허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제5조).

등록신청은 실시허가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나 제3자 대항효력을 발생시킨다. 신고를 거치지 않고 계약의 무효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국가지식산업국은 전국 특허실시허가계약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지식산업국의 위임을 받은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특허계약의 신고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등록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된 형식에 의하여 적시에 신고출원서류를 국가지식산업국에 송부하여 특허권 및 특허출원권의 법률상태를 확인해야 한다(특허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제2조, 제16조).

중국에 장기적인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 특허계약등록을 신청하려면 국가지식산업국에서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특허사용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제11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지식산업국에서 제정한 계약서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계약서양식을 적용할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허계약신고를 처리하려면 신고출원서, 계약부분, 특허증서 또는 특허출원접수통보서사본, 양도인의 신분증명서를 1식 2부 제출해야 한다(특허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제13조).

(2) 등록 및 공고

특허계약신고의 관련 내용은 국가지식산업국에서 특허등기부에 등기하는 동시에 특허공보에 계약번호, 양도인, 양수인, 주요 분류번호, 특허번호, 특허신고일, 권리부여공고일, 계약성질, 신고일, 계약이행기간, 계약변경 등을 공고한다(특허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제20조).

(3) 대항력

특허권리에 이전이 발생할 경우, 이행 중인 실시허가특허계약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특허실시허가계약등록관리방법 제23조). 특허실시허가계약이 이미 등록된 경우 제3자에 대항력이 있으므로 양수인은

피허가인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일례로 A가 B에게 자신의 특허를 실행하게 한 후 C에게 당해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피허가인 B는 여전히 계약에서 약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IV. 기술자문계약

1. 기술자문계약의 정의

기술자문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위하여 특정기술의 실행가능성 논증, 기술예측, 특정 주제의 기술조사 및 분석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계약법 제356조).

2. 위탁인의 의무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는 약정에 따라 자문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 기술배경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 데이터를 제공하며, 수탁인의 업무성과를 수령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계약법 제357조).

3. 수탁인의무

수탁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자문보고서 또는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제출된 자문보고는 약정한 요구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계약법 제358조).

4. 위약책임과 위험부담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가 약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성과를 수령하지 않거나 또는 기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수를 회수할 수 없고 미지급한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수탁자가 기한 내에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한 자문보고서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줄이거나 무보수 등의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기술자문계약의 위탁자가 약정 요구에 부합한 수탁자의 자문보고서와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여 손실이 초래된 경우, 위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계약법 제359조).

5. 기술성과의 귀속

기술자문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와 업무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자에 속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업무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탁자에 속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계약법 363조).

V. 기술서비스계약

1. 기술서비스계약의 정의

기술서비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기술지식으로 다른 일방의 특정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정계약과 하도급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계약법 제356조 제2항).

‘특정기술문제’에는 전문 기술지식, 경험과 정보해결에 운용할 관련 제품구조 개선, 공법절차 개선, 제품품질 향상, 제품원가 절감, 에너지소모 절약, 자원환경 보호, 안전조작 실현, 경제효율과 사회효율 향상 등의 전문기술 문제를 포함한다(최고인민법원이 기술분쟁사건심리시 적용하는 법률에 대한 해석 제33조).

2. 위탁인의 의무

약정에 따라 업무조건을 제공하고 협력사항을 완성해야 하며, 업무성과를 수령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계약법 제360조).

3. 수탁인의 의무

약정에 따라 서비스 항목을 완성해야 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며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할 지식을 전수해야 한다(계약법 제361조).

4. 위약책임

기술서비스계약의 위탁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업무진도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성과를 수령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수를 회수할 수 없고, 미지급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

기술서비스계약의 수탁자가 계약약정에 의한 서비스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계약법 362조).

5. 기술성과의 귀속

기술서비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와 업무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수탁자에 속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업무 성과를 이용하여 완성한 새로운 기술성과는 위탁자에 속한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계약법 363조).

Ⅵ. 기술수입계약

1. 관련 법률

1985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기술인입계약관리조례와 1988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인 입계약관리조례시행세칙은 이미 실효하였으며 현행법은 2001년에 반포한 기술수출입계약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合同管理条例)이다.

2. 신구조례의 차이

가. 기술분류 심사제도

신구조례는 기술수출입에 대하여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구조례는 모든 기술수입계약은 반드시 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분류	관리수단	설명
금지형	금지	수입을 금지한 기술은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제한형	허가증관리 실시	사전에 상무부서(각지의 외자위원회, 대외경제무역국 등 정부기관)로부터 효력이 있는 수출입허가계약을 받아야만 기술을 수입할 수 있다.
자유형	등기제도	상무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상무부서에 등록수속을 해야함. 다만, 등록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필요조건이 아니다(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기술이 자유형에 해당).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화물 또는 기술에 대하여 목록을 정하여 관리한다.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의 수출입화물·기술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수출입의 화물 또는 기술을 제한·금지하는 목차를 제정·조정 및 공포하였다. 수입금지·제한기술목차(禁止進口限制進口技術目錄, 2007년 10월 23일 시정)에 근거하여 ‘금지형’ 또는 ‘제한형’ 기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목록 외의 기술은 ‘자유형’ 기술에 속한다.

나. 심사기간의 단축

구조례에서는 심사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신조례는 심사기간을 많이 단축하였다. 자유류의 기술에 대해서는 3일 내에 기술수입계약등기를 진행하고 기술수입계약등기증을 공포한다. 제한류의 기술에 대하여서는 주관부서가 기술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허가한다면 기술수입의향서를 공포하고 신청인은 기술계약을 체결하며 주관부서가 기술계약부분 등 문서를 받은 후 10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 만약 허가하면 기술수입허가증을 공포한다.

다. 행정관리부서의 관리 완화

구조례와 비교할때 신조례는 계약조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당사자에게 더 많은 자유약정공간을 부여하고 있다.

	구조례	신조례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자유로이 약정 가능
계약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심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효력 발생	자유류의 기술수입계약은 체결시 효력 발생. 제한류의 기술수입계약은 기술수입허가증을 획득한 후 효력 발생.
비밀보장기간	비밀보장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만료 후의 기술사용	양수인은 계속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다.

라. 불복 소송을 할 경우

구조례에서는 만약 주관부서의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신조례에서는 국무원외경주관부서에서 내린 기술수출입에 관련된 비준, 허가, 등기 또는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기술수출입계약관리조례 제53조).

마. 법률책임

구조례에서는 당사자 및 기술수출입관리근무인원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조례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기술수출입계약관리조례 46조 내지 52조는 각종 위법행위의 처벌조항을 규정하였다.

3. 기술수입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기간

구조례는 기술수입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신조례는 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나. 제3자의 권리침해 책임

기술양도계약의 양도인은 자신이 제공한 기술의 합법적 소유자 또는 양도권자, 허가인이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기술수입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결과 제3자에 의하여 권리침해로 피소될 경우 양수인은 즉시 양도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양도인은 통보를 받은 후 양수인과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기술수입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사용한 결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계약법 제353조).

다. 비밀유지기간

기술수출입계약의 양수인과 양도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비밀유지범위와 비밀유지기간 내에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 중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부분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비밀유지기간 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일방은 비밀유지기술이 자신의 원인이 아닌 이유로 공개된 경우에 부담해야 할 비밀유지의무는 바로 중지된다(조례 제26조).

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의 기술 사용

기술수입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기술양도인과 양수인은 공평합리적 원칙에 의하여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다(조례 제28조).

마. 기술의 보증의무

기술수입계약의 양도인은 제공한 기술이 완전하고 착오가 없으며 효력을 발생하고 약정한 기술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기술수출입계약관리조례 제25조). 기술목표에 도달할 지 여부는 양수인의 기기성능, 기술수준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 기술직원의 수준이 너무 낮아 약정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쟁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수인을 선택할 경우, 기술목표를 명확히 약정하는 동시에 기술장비 및 기술직원에 관한 일정한 요구도 약정해야 한다.

바. 개량기술성과의 귀속

기술수입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술을 개선하여 얻은 성과는 개선한 일방에 귀속된다(조례 제27조).

사. 불합리적인 제한조건

기술수입계약에는 아래의 제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조례 제29조).

- ① 양수인에게 기술수입에 비 필수적인 부가조건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는 것, 즉 불필요한 기술, 원자재,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등을 포함
- ② 양수인에게 특허권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특허권의 무효가 공표된 기술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관련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
- ③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을 양수인이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양수인이 개선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 ④ 양수인이 기타 경로를 통하여 양도인이 제공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 또는 당해 기술과 경쟁관계인 기술획득을 제한하는 것
- ⑤ 불합리하게 양수인의 원자재,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경로 또는 공급원을 제한하는 것
- ⑥ 불합리하게 양수인의 제품생산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
- ⑦ 불합리하게 양수인이 수입한 기술생산제품의 수출경로를 이용하는 것

아. 기술계약사법해석의 제한규정

계약법 제329조는 ‘불법 독점기술, 기술진보를 방해 또는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기술계약분쟁사건의 심리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技术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10조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목적기술을 기초로 한 신 연구개발의 실행을 제한, 개선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 또는 쌍방이 교환한 기술조건이 대등하지 않는 상황 등, 일방의 개선기술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비 호혜적으로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개선한 기술 지재권을 무상 독점 또는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 ② 당사자 일방이 기타 경로를 통해 기술제공자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 또는 당해 기술과 경쟁관계인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③ 당사자 일방이 시장경쟁요구에 의하여 합리적 방식에 따라 충분하게 계약목적물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술도입자가 계약목적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량·품종·가격·판매경로와 수출시장을 명백히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
- ④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사용에 비 필수적인 부가조건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기술, 원자재, 제품, 설비, 서비스 및 불필요한 직원의 수령 등을 포함하는 행위
- ⑤ 불합리하게 기술도입자에게 원자재, 부품, 제품 또는 설비 등의 구입경로 또는 공급원을 제한하는 행위
- ⑥ 기술도입자에게 계약목적 기술의 지재권 유효성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의의 부가조건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 하는 행위



제 3 부

특허 관련 법령



I.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1984년 3월 1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92년 9월 4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을 하고, 2000년 8월 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008년 12월 27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근거하여 제3차 개정을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발명창조의 장려·발명창조의 응용추진·창조능력의 제고·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 ② 발명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 ③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3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심사하여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한다.

- ②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①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이용하고 그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그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그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임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9조 ①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그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 ①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 ③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①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하거나, 또는 특허권자의 특허방법의 사용 및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그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확산을 결정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15조 ①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그 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특허실시를 허락한 경우, 취득한 실시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 ② 전항 규정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7조** ①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② 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9조** ①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특허대리기구는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임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 제20조** ① 누구라도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먼저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사의 절차·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④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공정·정확·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즉시에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야 한다.
- ③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특허권 수여조건

- 제22조**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 ② 신규성이란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존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③ 창조성이란 현존기술과 비교하여 그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그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④ 실용성이란 그 발명과 실용신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⑤ 이 법 규정의 현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 제23조**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 ②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 또는 현존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 ③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이 법 규정의 현존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설계를 말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 (1) 과학발견
 -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 (3) 질병의 진단·치료 및 방법
 -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 (6) 평면인쇄품의 도안·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
- ②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 3 장 특허출원

제26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경우, 청구서¹⁾·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²⁾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명확·간단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1) 청구서(請求書)란 출원서를, 설명서(說明書)는 명세서, 권리요구서(權利要求書)란 권리청구범위를 말한다.

2) 설계자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창작자를 말한다.

- 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그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①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그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그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28조 공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①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공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① 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별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①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① 발명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그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그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 장 특허권의 기간·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아래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 (1)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 ② 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특허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그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① 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화해,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배상액·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게다가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받고 그 행위를 배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쟁에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경우

제49조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현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공공의 건강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하여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1조** ① 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2조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이 법 제48조 제2호 규정의 상황에 한정한다.

제53조 이 법 제48조 제2호 또는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제54조 이 법 제48조 제1호 또는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실시하는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제55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제57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하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8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특허권 보호

제59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②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①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②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심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62조 특허권의 침해분쟁 중, 권리침해 혐의자가 그가 실시하는 기술 또는 설계가 현존기술 또는 현존설계에 속한다는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3조 특허허위표시행위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배 이내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열람 및 복사,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조사·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다.

-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한다.

- ② 권리자의 손실·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인수에 따라 1만 위엔 이상

100만 위엔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 제66조** 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한차례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복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 ④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제67조** ①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 ④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68조**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 전까지 그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9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개인이 판매한 후, 그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조·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영해·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제조·사용·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제70조 생산경영을 위한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인 것을 모르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조 이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74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8 장 부칙

제7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6호로 공포하며, 2002년 12월 28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을 하였으며, 2010년 1월 9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을 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이하 ‘특허법’ 이라 함)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절차는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형식으로 처리한다.

제3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명·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거 및 증명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중문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서류는 송부일의 우편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우편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서류는 특허대리기구에 송부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는 청구서 중에 명확히 지정한 연락인에게 송부한다.
-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한다.
-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교부일이 송달일이다.
- ⑤ 서류의 송부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면 그 문서는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기한의 첫째 날(日)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마지막 월의 상응한 일(日)을 기한 만료일로 하고, 해당 월에 상응한 일(日)이 없을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기한만료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째 근무일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 제6조** ①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 외에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한 경우, 권리회복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권리상실 전에 처리했어야 하는 상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한 경우 권리회복 청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④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⑤ 이 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특허법 제24조·제29조·제42조 및 제68조 규정의 기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특허출원이 국방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 특허기구가 수리하여 심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출원이 국방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국방특허기구에 이송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국방특허기구가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권 수여를 결정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국방이익 외의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즉시 비밀유지 특허출원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출원의 비밀유지 심사·거절불복 및 비밀유지 특허권의 무효선고의 특수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8조 ① 특허법 제20조 규정의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말한다.

②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경우, 아래 방식 중의 하나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직접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하고 그 기술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한 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해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국제출원을 한 경우, 비밀유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 세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후 심사하여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출원인에게 비밀유지 심사를 통지한다.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심사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심사를 통지한 경우 즉시 비밀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특허법 제5조 규정의 법률을 위반하는 발명창조는 단지 그 실시가 법률이 금지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특허법 제28조 및 제42조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 특허법 규정의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

② 이 세칙 규정의 출원일이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을 말한다.

제12조 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란 아래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1) 자기 직무 중에 한 발명창조

(2) 본 단위가 부여한 자기 직무 외의 임무수행 중에 한 발명창조

(3) 퇴직·원래의 단위를 이직하거나 노동 또는 인사관계 종료 후 1년 내에 한 경우, 원래의 단위에서 담당한 자기 직무 또는 원래의 단위가 부여한 임무와 관련 있는 발명창조

②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란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위를 포함하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이란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속품·원재료 또는 대외로 공개가 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3조 특허법 규정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적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단지 조직의 업무를 책임진 자·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제14조 ① 특허법 제10조 규정의 특허권 양도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자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 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登記해야 한다.

③ 특허권으로 질권을 설정할 경우, 피질권자와 질권자는 공동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질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허출원

제15조 ①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2부를 제출해야 한다.

-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규정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③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권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④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 중에 명확히 지정한 첫 번째 출원인을 대표자로 한다.

제16조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의 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1)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명칭
- (2) 출원인이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 그 명칭 또는 성명·주소·우편번호·조직기구번호 또는 신분증번호를, 출원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성명 또는 명칭·국적 또는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
- (3)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 (4)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위임기구 명칭·기구번호 및 그 기구가 지정한 특허대리인 성명·자격증 번호·연락전화
- (5)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함)의 출원일·출원번호 및 원 수리기구의 명칭
- (6)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
- (7) 출원서류 목록
- (8) 첨부서류 목록
- (9) 기타 명확한 기재가 필요한 관련 사항

제17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그 명칭은 청구서 중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설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술영역: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이 속하는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
- (2)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검색·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서류를 인용하여 증명
- (3) 발명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채용한 기술방안을 명확히 기재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확히 기재
- (4) 첨부도면 설명: 설명서에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
- (5) 구체적인 실시방법: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는데 알고 있는 최적의 방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을 대조
-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인은 전항에 규정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의 모든 부분 앞에는 표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성질이 기타 방식 또는 순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할 수 있고, 타인이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에는 규범적 단어를 사용해야하고 어구가 명확해야 하며, “권리요구에...설명한...바와 같이”와 같은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발명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 또는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설명서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그 서열표를 설명서의 단독부분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그 서열표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실용신안특허출원 설명서는 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을 표시한 첨부도면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몇 개의 첨부도면은 ‘도1, 도2, ...’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배열한다.

-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자부분 중에 언급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서는 아니 되며,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설명서의 문자부분에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서류 중 동일한 구성부분을

표시하는 첨부도면 표기는 일치해야 한다.

- ③ 첨부도면 중 필수적인 단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주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① 권리요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 ② 권리요구서에 여러 항의 권리요구가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를 매겨야 한다.
- ③ 권리요구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는 설명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와 일치해야 하고, 화학식 또는 수학식은 있을 수 있으나 삽화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또는 “도면···표시된 바와 같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권리요구 중의 기술특징은 설명서의 첨부도면 중의 상응한 표기를 인용할 수 있고, 그 표기를 상응한 기술특징 다음의 괄호 안에 기재하여 권리요구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표기를 권리요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① 권리요구서는 독립권리요구가 있어야 하고, 종속권리요구는 있을 수 있다.

- ② 독립권리요구는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해야 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해야 한다.
- ③ 종속권리요구는 부가의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인용한 권리요구에 대하여 한층 더 한정해야 한다.

제21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요구는 전술부분과 특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1) 전술부분: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기술방안의 주제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공유의 필요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 (2) 특징부분: “그 특징은···”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기술특징을 구별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 및 전술부분에 명확히 기재한 특징과 함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
-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질상 전항의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권리요구는 기타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③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독립권리요구만 있어야 하고,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 앞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22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1) 인용부분: 인용한 권리요구의 번호 및 그 주제 명칭을 명확히 기재
- (2) 한정부분: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부가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 ② 종속권리요구는 단지 앞의 권리요구만 인용해야 한다. 2항 이상의 권리요구를 인용하는 다항의 종속권리요구는 단지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앞의 권리요구를 인용해야 하고, 다른 1항으로 다항의 종속권리요구의 기초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① 설명서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및 소속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② 설명서 요약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첨부도면이 있는 특허출원은 해당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첨부도면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크기 및 명확도는 해당 도면을 4cm×6cm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도면중의 자세한 각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의 문자부분은 300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약 중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에 관련되고, 공중이 그 생물재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물재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속영역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 출원일 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까지 해당 생물재료의 견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가한 보존기구에 보존을 제출하고, 출원 시 또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존기구가 발급한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견본은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출원서류 중 해당 생물재료의 특징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3) 생물재료의 견본 보존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청구서와 설명서 중에 그 생물재료의 분류명(라틴어 명칭)·그 생물재료의 견본을 보존하고 있는 기구명칭·주소·보존일시·보존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출원 시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발명특허출원인이 이 세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을 보존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후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과 관련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 (2) 기타 누구에게도 해당 생물재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증
- (3) 특허권 수여 전에 단지 실험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증

제26조 ① 특허법 규정의 유전자원이란 인체·동물·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기능의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구비한 재료를 말하며, 특허법 규정의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란 유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 ②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인은 청구서에 설명을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형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27조 ① 출원인이 색채보호를 청구할 경우, 색채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출원인은 보호가 필요한 매건 디자인 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①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용도·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설계요점을 가장 잘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 1부를 지정해야 한다. 투시도 또는 색채보호 청구를 생략한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동일 제품에 대한 다량의 유사한 디자인을 1건 디자인특허로 출원할 경우, 간단한 설명에 그 중 하나를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 ③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디자인특허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이하게 부패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품은 건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 제30조** ① 특허법 제24조 제1호 규정의 중국정부가 승인한 국제전람회란 국제전람회조약에 규정된 국제전람국에 등록 또는 그가 인가한 국제전람회를 말한다.
- ② 특허법 제24조 제2호 규정에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전국성의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
- ③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 성명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련 국제전람회 또는 학술회의·기술회의를 조직한 단체가 발급한 관련 발명창조는 이미 전시 또는 발표 및 전시 또는 발표일시가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 제3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출원인이 이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성명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 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1조**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선 출원서류 부분은 원 수리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해당 수리기관과 체결한 협의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자교환 등의 경로를 통하여 선 출원서류 부분을 취득한 경우, 출원인이 해당 수리기관이 증명한 선 출원서류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우선권의 요구는 출원인이 청구서에 선 출원의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 선 출원서류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우선권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서에 선 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및 원 수리기관의 명칭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 우선권을 요구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선 출원서류의 부분에 기재된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불일치하는 경우 우선권 양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디자인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외우선권을 요구하고 그 선 출원에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이 세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간단한 설명에 선 출원서류의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우선권 향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출원인은 1건 특허출원 중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해당 출원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고 선 출원이 발명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선 출원이 실용신안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후 출원 시 선 출원의 주제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내우선권 요구의 기초로 할 수 없다.

- (1) 이미 국외우선권 또는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 (2) 이미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 (3)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할출원에 속하는 경우
- ③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그 선 출원은 후의 출원일로부터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외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그 국적증명
-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의 증명서류
- (3) 출원인의 소속국가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그 국가에서 특허권·우선권 및 기타 특허관련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증명서류

제34조 특허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건 특허로 출원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동일 또는 상응한 특정기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특정기술의 특징이란 매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말한다.

제35조 ① 특허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제품의 다항의 유사한 디자인을 1건으로 출원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기타 설계는 간단한 설명 중에 지정한 기본 설계와

- 유사해야 한다. 1건의 디자인 출원 중 유사한 디자인은 10항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특허법 제31조 제2항 규정의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제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이란 각 제품이 분류표 중 동일한 대 분류에 속하고 습관상 동시에 판매 또는 사용되며, 각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설계구상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 ③ 2항 이상의 디자인을 1건 출원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디자인 제품의 각 도면 또는 사진의 명칭 앞에 각항 디자인의 순서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36조**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취하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제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②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를 공개하는 인쇄준비업무가 완료된 후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는 공개한다. 다만,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은 후에 출판된 특허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 3 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 제37조**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 및 무효선고 과정 중 심사와 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가까운 친척인 경우
 -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특허복심위원회 구성원이 원출원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면을 포함) 및 권리요구서,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서·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간단한 설명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39조** 특허출원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1)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에 첨부도면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요구서가 부족한 경우,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이 청구서·도면 또는 사진·간단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 (2) 증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 세칙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5)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제1항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6) 특허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불명확 하거나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0조 설명서 중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면이 없거나 부분적인 첨부도면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하는 성명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날 또는 우편으로 첨부도면을 송부한 날을 출원일로 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 제41조** ① 2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말함,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각 특허를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해야 한다.
- ②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말함)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고 발명특허도 출원한 경우, 출원 시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다른 특허도 출원하였음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9조 제1항의 동일한 발명창조에 관하여 단지 1항의 특허권만 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수여를 공고할 때 출원인이 이미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발명특허도 출원했다는 설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발명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규정기한 내에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를 성명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권의 수여 공고 시 출원인이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했다는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그 발명특허출원을 거절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발명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실용신안 특허권은 발명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종료한다.

- 제42조** ① 1건 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 제1항 규정의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이 이미 거절·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1건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1조와 이 세칙 제34조 또는 제3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그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분할된 출원은 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3조** ① 이 세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은 원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 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분할출원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분할출원 청구서에는 원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분할출원 제출 시 출원인은 원 출원서류 부분을 제출해야 하고, 원 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원 출원의 우선권서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제44조** ①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의 초보심사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의 각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1) 발명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 제1항·제20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 제2항·제26조 제5항·제31조 제1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17조 내지 제21조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 제1항·제20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 내지 제23조·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 제3항·제22조 제2항·제4항·제26조 제3항·제4항·제31조 제1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0조·제43조 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3) 디자인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16조·제27조·제2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 제4항·제23조 제1항·제27조 제2항·제31조 제2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4) 출원서류가 이 세칙 제2조·제3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여전히 전항에 열거한 각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

제45조 ① 특허출원서류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과 관련되는 기타 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의 작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6조 출원인이 조기에 자신의 발명특허출원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그 출원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한 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출원을 공개해야 한다.

제47조 출원인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소속 류를 기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해야 한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류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보정할 수 있다.

제48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의 공고일까지, 누구든지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9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36조 규정의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충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1조 ①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및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 통지서가 지정한 결함에 대하여 보정해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중의 문자와 부호의 명백하고 현저한 착오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정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문자의 정정 또는 중·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해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에 대한 보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해야 한다.

제53조 특허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출원이 특허법 제2조 제2항·제20조 제1항·제22조·제26조 제3항·제4항·제5항·제

31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20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출원의 보정이 특허법 제3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된 출원이 이 세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① 국무를 수여하는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에 따라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고해야 한다.

②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 비밀유지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 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비밀유지 특허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비밀유지 특허권의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제56조 ①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 수여의 결정 공고 후, 특허법 제60조 규정의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할 경우,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 항의 청구는 1항의 특허권에 한정한다.

③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청구인이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평가보고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권 평가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 항의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권에 대하여 여러 명의 청구인이 특허권 평가보고 작성을 청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단지 1부의 특허권 평가보고만 작성한다. 누구든지 그 특허권 평가보고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및 특허단행본 중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정정해야 하고, 정정한 것을 공고해야 한다.

제 4 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제59조 특허복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 제60조** ① 특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경우, 복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 ② 복심청구서가 특허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 ③ 복심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복심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1조** ① 청구인은 복심청구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 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 ②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는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62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해야 한다. 원 심사부서는 복심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에 동의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하고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3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복심청구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그 복심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복심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및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원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해야 한다.
- ②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원 거절결정이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거나,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를 통하여 원 거절결정이

지적인 결함을 해소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 심사부서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 제64조** ①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복심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한 경우, 복심절차는 종료한다.

- 제65조** ① 특허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 �고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필요한 증거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를 설명하고, 매 항의 이유가 근거하고 있는 증거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
 ② 전항 규정의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란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조·제21조 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 제3항·제4항·제27조 제2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조 제2항·제43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66조** ①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특허법 제19조 제1항 또는 이 세칙 제6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후, 또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디자인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였으나, 권리충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선고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7조**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관련 서류부분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무효선고청구인은 지정기한 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전달서류통지서 또는 무효선고청구심사통지서에 답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9조 ① 무효선고청구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그 권리요구서를 정정할 수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설명서 또는 첨부도면을 정정할 수 없고, 디자인특허권자는 도면·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정정할 수 없다.

제70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사건의 필요에 의하여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 진행을 결정한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심리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두심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무효선고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구두심리통지서에 대하여 지정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심리에 출석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자가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석 심리를 할 수 있다.

제71조 무효선고청구 심사과정 중에는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제72조 ①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이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그 무효선고청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무효선고청구의 심사절차는 종료한다. 다만, 특허복심위원회가 이미 진행한 심사업무에 근거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 심사절차는 종료하지 아니 한다.

제 5 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73조 ① 특허법 제48조 제1호 규정의 그 특허를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특허권자 및 그 피허가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는 방식 또는 규모가 국내에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법 제50조 규정의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이란 공공의 건강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약품 중의 어떤 특허약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특허권을 취득한 그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활성성분 및 그 제품에 필요한 진단용품을 포함한다.

제74조 ① 강제허가 수여를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청구서의 부분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청구를 거절하거나 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결정 및 그 이유초안을 작성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법 제50조 규정의 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공공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제허가를 수여하는데 관한 규정에 동시에 부합해야 한다. 단 중국이 유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5조 특허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의 재결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를 제출하고 쌍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었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6 장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

제76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거나 또는 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 특허법 제16조 규정의 장려·보수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기업·사업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및 보수는 국가의 관련 재무제도 및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7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도 특허법 제16조 규정의 장려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1항 발명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3,000위엔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1항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1,000위엔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건의를 그의 소속단위가 채택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도 특허법 제16조 규정의 장려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실시에 의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2%, 또는 그 디자인특허의 실시에 의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회성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취득한 사용료에서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7 장 특허권의 보호

제79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区)가 설치된 시(市)인민정부에 설립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80조 공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허위의 특허표시행위 조사 및 처리·특허분쟁 조정에 대하여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제81조 ① 당사자가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또는 특허분쟁의 조정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특허권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둘 이상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모두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한 경우,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가 특허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공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제82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과정 중, 피청구인이 무효선고청구를 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지이유가 현저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제품 또는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경우, 공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② 특허표시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정명령을 한다.

제84조 ① 아래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 규정의 허위의 특허표시행위에 해당한다.

(1)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특허권이 무효선고가 된 후 또는 종료 후에 계속하여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제1호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제품 설명서 등의 자료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칭하거나 특허출원을 특허로 칭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 또는 설계가 특허기술 또는 설계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 (4)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5) 기타 공중을 혼동하게 하거나,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② 특허권 종료 전에 법에 의하여 특허제품·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시를 하고, 특허권 종료 후에 그 제품을 허락판매 및 판매를 한 경우 허위의 특허표시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③ 판매가 허위의 특허표시 제품이라는 것으로 몰랐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판매정지명령을 하되 과태료 처분은 면제한다.

제85조 ① 특허법 제60조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래의 특허분쟁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 (1) 특허출원권과 특허권 귀속분쟁
- (2) 발명자 또는 설계자 자격분쟁
- (3)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장려·보수분쟁
- (4) 발명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권 수여 전,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쟁
- (5) 기타 특허분쟁
- ② 전항 제4호 규정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조정을 청구할 경우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① 당사자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조정을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절차의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관련 수리문서 부분을 첨부해야 한다.
-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결정한 조정서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를 회복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지를 청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련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결론나지 아니하고, 관련 절차를 계속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에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연장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의 심리 중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재정서를 받고 집행통지서일에 피보전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중지시키는 관련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전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이 세칙 제86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한 관련 절차의 중지란 특허출원의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절차, 특허권 수여 및 특허권 무효선고절차를 잠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원의 포기·변경·이전, 특허권 질권 및 특허권 기간 만료 전 절차 등을 잠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 8 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제8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작성하고, 아래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한다.

- (1) 특허권의 수여
- (2) 특허출원권·특허권의 이전
- (3) 특허권의 질권·보전 및 그 해제
- (4) 특허실시허가계약의 등록
- (5) 특허권 무효선고
- (6) 특허권 종료
- (7) 특허권 회복
- (8)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 (9)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과 주소의 변경

제9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아래 내용을 공개 또는

공고한다.

- (1) 발명특허출원의 서지사항 및 설명서 요약
- (2)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 청구 및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한 실질심사의 결정
- (3) 발명특허출원공개 후의 거절·취하·취하간주·포기간주·회복 및 이전
- (4) 특허권의 수여 및 특허권의 서지사항
- (5)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설명서 요약, 디자인특허의 도면 또는 사진 1부
- (6) 국방특허·비밀유지특허의 비밀 해제
- (7) 특허권의 무효선고
- (8) 특허권의 종료·회복
- (9) 특허권의 이전
- (10) 특허실시허가계약의 등록
- (11) 특허권의 질권·보전 및 그 해제
- (12) 특허실시 강제허가의 수여
- (13)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의 변경
- (14) 서류의 공시송달
- (15)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한 수정
- (16) 기타 관련 사항

제9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보·발명특허출원 단행본 및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디자인특허 단행본을 무료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한다.

제9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기타 국가·지역의 특허기관 또는 지역성 특허조직과 특허문서를 교환할 책임이 있다.

제 9 장 비 용

제93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아래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1) 출원료·출원부가료·공보인쇄료·우선권·요구비용
- (2)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료·복심료

- (3)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연차등록료
 - (4) 권리회복청구료·기한연장청구료
 - (5) 서지사항변경료·특허권평가보고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
- ② 전항에 열거한 각종 비용의 납부표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재정부서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함께 규정한다.

제94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②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 송부하는 납부용지에 정확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및 납부할 비용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비용납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우체국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우체국의 환 지출 소인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환이 지출된 날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 ④ 특허비용을 많이 납부하였거나 중복납부 또는 착오로 특허비용을 납부한 경우, 당사자는 비용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 ①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 또는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료·공개인쇄료 및 필요한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료 납부와 동시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6조 당사자가 실질심사 또는 복심을 청구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7조 출원인은 등록절차를 밟을 경우 특허등록료·공고인쇄비 및 특허권 수여의 당해 연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8조 특허권 수여의 당해 연도이후의 연차등록료는 전 1년도의 기한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와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비용납부기한 1개월 마다 그 연도 연차등록료의 5%를 계산하여 부가 수납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차등록료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종료한다.

제99조 ① 권리회복청구료는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기한연장청구료는 상응한 기한 만료일 전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서지사항변경료·특허권평가보고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0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 판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제 10 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10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국제출원을 수리한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하고 중국을 지정한 특허국제출원(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이라 함)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처리단계(이하에서는 ‘중국 국가단계’라 함)

에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기타 각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그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제103조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권일(이 장에서는 ‘우선권일’ 이라 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기한추가비용을 납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4조 ①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3조 규정의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1) 증문으로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한다는 서면성명을 제출하고 국제출원번호와 특허권의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 (2) 이 세칙 제93조 제1항 규정의 출원료·공개인쇄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이 세칙 103조 규정의 기한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3)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원시국제출원의 설명서와 권리요구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 (4)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에는 발명창조의 명칭·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술한 내용은 세계지적소유권 기구 국제국(이하에서는 ‘국제국’ 이라함)의 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출원에 발명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술한 성명 중에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 (5) 국제출원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요약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첨부도면 및 요약의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 부분과 요약의 첨부도면 부분을 제출해야 하며, 첨부도면에 문자가 있을 경우 문자를 상응한 중문으로 교환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으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개서류의 요약과 요약의 첨부도면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6) 국제단계에서 국제국에 출원인 변경수속을 한 경우 변경 후의 출원인이 출원권을

향유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필요 시, 이 세칙 제93조 제1항 규정의 출원부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이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한 날자(이하에서는 ‘진입일’이라 함)를 명확히 하여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했음을 통지해야 한다.
- ③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했으나 이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5조 ① 국제출원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 (1)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 또는 국제출원의 중국 지정이 취하된 경우
- (2)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이 세칙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 (3) 출원인이 중국 국가단계 진입수속을 밟았으나,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까지 이 세칙 제104조 제1호 내지 제3호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전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중국에서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 이 세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국제출원이 중국에서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 이 세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보정을 하고 출원인이 보정된 출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요구한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부분의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중문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보정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국제출원에 관련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의 하나에 해당하고 국제출원 시 성명을 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에 설명을 하고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세칙 제30조 제3항 규정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8조 ①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건본의 보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 제3호의 요구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의 진입성명 중 생물재료 건본 보존사항의 서류 및 그 서류 중에 구체적인 기재 위치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처음 제출한 국제출원의 설명서에 이미 생물재료의 건본에 대한 보존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중국 국가단계의 진입성명 중에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생물재료는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건본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 제1호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9조 국제출원에 관련된 발명창조가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 중에 설명을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형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 ①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 시 해당 우선권의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선 출원서류의 부분을 제출한 경우,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을 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 출원서류의 부분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 출원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출원을 심사·처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 제2항 규정의 청구를 해야 한다. 국제국이 그때까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확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제112조** ① 실용신안특허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출원서류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발명특허권의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이 세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① 출원인은 제출한 설명서·권리요구서 또는 첨부도면의 문자에 대한 중문 번역문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의 규정 기한 내에 원래의 국제출원원문에 따라 보정할 수 있다.

-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공고 준비업무를 완료하기 전
 -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송부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 ② 출원인이 번역문의 착오를 수정할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고 규정된 보정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보정할 경우, 지정기한 내에 이 조 제2항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4조 ① 발명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의 중문 번역문을 공개해야 한다.

- ② 발명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이 국제국에서 중문으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문 이외의 문자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개한 날부터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 ③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의 공개란 이 조 제1항 규정의 공개를 말한다.

제115조 ① 국제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이 세칙 제4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가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의

단일성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고, 출원인은 규정에 의한 부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의 어떤 부분이 국제검색 또는 국제초보심사를 거치지 못하고, 중국 국가단계에 진입 시 출원인이 서술한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요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가 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제출원 중에 검색 또는 초보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일 부여를 거절당하거나 또는 선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서류 중의 어떤 서류의 부분이라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3조 규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국이 이관한 문서를 접수한 후,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사해야 한다.

제117조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시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하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 11 장 부칙

제118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누구든지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특허출원서류와 특허등록부를 조사·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등기부 부분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취하간주·거절 및 취하된 특허출원서류는 그 특허출원의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2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③ 포기·전부무효선고 및 종료된 특허권 서류는 그 특허권의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3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각종 절차를 밟을 경우 출원인·특허권자·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② 발명자의 성명·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 및 주소·특허대리기구의 명칭·주소 및 대리인의 성명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지사항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변경이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12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출원 또는 특허권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하고 소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처음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각종 절차를 밟을 경우,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발명창조 명칭 및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③ 1건 우편에는 단지 동일 출원의 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제121조 ① 각종 출원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되어야 하고 흑색의 글씨체로 정연·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도면은 제도 공구와 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은 균일하고 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서·설명서·권리요구서·첨부도면 및 요약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 출원서류의 문자부분은 가로로 작성되어야 하고, 종이는 단면을 사용해야 한다.

제12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 근거하여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제123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Ⅲ. 특허행정집행법판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특허행정집행 법판법』을 제정하여 지금 공포한다. 동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유효한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특허분쟁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와 특허권의 보호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유지·규범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의하여 이 판법을 제정한다.

제2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조사·처리할 경우,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즉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할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시비를 분명히 한 다음, 당사자 상호간에 이해하도록 하여 조정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제3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전문담당인력을 배치하여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특허분쟁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해야 한다.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국가지식산업국이 발급한 특허행정집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사건처리 담당자는 공무집행 시, 엄숙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4조 ①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사건에

대하여, 국가지식산업권국은 필요 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다.

-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특허분쟁의 조정·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 중,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국가지식산업권국은 지도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

제5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를 청구할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함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함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함
4. 접수사건이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접수사건 범위와 관할에 속해야 함
5. 당사자가 그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하지 않아야 함

-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이란 특허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 및 특허권의 합법적 승계인을 포함한다. 특허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 중, 독점적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배타적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특허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는 상황 하에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실시허가계약의 피허가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를 청구할 경우, 청구서 및 관련 특허권의 특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피청구인의 수에 따라 청구서의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국가지식산업권국에 관련된 특허권의 법률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산업권국이 작성한 검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①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직무, 대리인

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기구의 명칭·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3. 처리를 청구하는 사항 및 사실과 이유

② 관련 증거와 증명자료는 청구서의 붙임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청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8조 청구가 이 판법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건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3명 또는 3명이상 홀수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가 이 판법 제5조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에게 불수리를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입안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서 및 청구서의 붙임을 우편·직접 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답변서 2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간을 경과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부분을 우편·직접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경우,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두심리를 결정한 경우, 최소한 구두심리 3일전에 당사자들에게 구두심리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 거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에 퇴장할 경우, 청구인일 경우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처리하고, 피청구인일 경우 결석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구두심리를 진행할 경우, 구두심리 참가자와 심리요점을 기록하여 착오가 없는 지를 검사한 후, 사건처리 담당자와 참가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특허법 제56조 제1항 규정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란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로서 기재된 기술특징이 확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기재된 기술특징과 서로 동등한 특징이 확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동등특징’이란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등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실현하여, 기본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소속영역의 보통기술자가 창조적 노동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제13조 ① 당사자가 조정·화해협의를 도달하거나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하는 것 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2.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 및 이유
 3. 침해행위의 성립여부 인정에 대한 이유 또는 근거
 4.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인 경우 피청구인의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는 유형·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침해행위의 불성립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5.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 방법 및 기한
- ② 처리결정서에는 사건처리 담당자가 서명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한 후, 피청구인이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재차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를 하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처리를 청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바로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처리결정을 할 수 있다.

제 3 장 특허분쟁의 조정

제15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분쟁에 대한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직무,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대리기구의 명칭·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3. 조정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사항 및 이유
- ③ 단독으로 특허권 침해배상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작성한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처리결정서 부분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조정청구서를 받은 후, 즉시 청구서 부분을 우편·직접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서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제17조** ①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동의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즉시 안건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의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 ② 피청구인이 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견진술서 중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단위 또는 개인은 조정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협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협의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제출하여 비치해야 한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종결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의 귀속 분쟁으로 조정을 청구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수리통지서를 가지고 국가 지식산업국에 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정이 협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협의를 가지고 국가지식산업국에 회복절차를 밟아야 하고, 협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작성한 안건취소통지서를 가지고 국가지식산업국에 회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구중지일로부터 만 1년까지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식산업국은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 4 장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처리

제2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발견 또는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 즉시 안건을 작성하고 2인 또는 2인 이상의 사건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조사는 행위발생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국가지식산업국이 관할을 지정한다.

제23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결정의 사실·이유 및 근거와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이유 및 증거에 대하여 확인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25조 ① 조사결과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가 성립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벌결정서를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명칭 또는 성명·주소
2.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증거·이유 및 근거
3. 처벌내용 및 이행방식
4. 처벌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처벌결정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사결과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가 불성립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안건을 취하하는 형식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제 5 장 증거수집·조사

제27조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28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사건과 관련된 계약·장부 등 관련 문서를 조사·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을 심문하고 측량·사진촬영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실지 조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 특허권의 침해혐의가 있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조사인에게 현장에서 제조과정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반드시 기록물을 만들어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기록물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증거수집·조사는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품특허에 관련된 경우 침해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견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특허에 관련된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분을 추출하여 견본으로 할 수 있다. 추출한 견본수량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추출한 견본의 명칭·특정·수량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0조 ①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고 견본을 추출하여 증거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보존을 등기할 수 있으며 7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존등기를 한 증거에 대해서 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은 훼손하거나 이동할 수 없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기록물을 만들고 보존을

등기한 증거의 명칭·특징·수량 및 보존장소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물에는 사건처리 담당자·피조사 기관 또는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증거를 수집·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조사·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은 사실대로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증거수집·조사를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부서는 즉시에 진지하게 증거수집·조사에 협조하고 가능한 빨리 회복시켜야 한다.

제 6 장 법률책임

제33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을 한 경우,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 정지명령을 하고 아래의 침해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1) 침해자가 특허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침해제품을 제조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금형의 폐기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 (2) 침해자가 특허방법을 사용한 경우, 사용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특허방법을 실시하는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금형을 폐기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 (3)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해야 한다.
- (4)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를 위한

전시를 하는 경우, 판매를 위한 전시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어떠한 실제 판매행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5) 침해자가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침해자에게 수입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하고, 침해제품이 이미 국경을 통과한 경우 그 침해제품 또는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도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침해제품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 침해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하고, 침해제품이 아직 국경을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결정을 관련 세관에 통지할 수 있다.
- (6) 침해행위를 정지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

제34조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을 한 후, 피 청구인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기간에 결정한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 ② 침해자가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결정한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처리결정에 대하여 기간만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①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가 형법 제216조 규정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법기관으로 이관시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② 특허증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형법 제280조 규정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법기관으로 이관시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아래의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

- (1) 제조·판매한 제품·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 또는 제조·판매에 있는 특허표시가 비특허제품인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그 특허표시와 특허번호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특허표시와 특허번호가 제품과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행위자에게 그 제품의 폐기를 명한다.
- (2)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에 비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 경우, 행위자에게 그 광고의 선전행위 또는 그 선전자료의 배포행위 정지를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아직 배포하지 아니한 선전자료의 제출을 명한다.

- (3) 계약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계약 중 비 특허기술을 특허기술이라 한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계약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명한다.
- (4) 타인의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또는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행위자에게 즉시 상술한 행위의 정지와 위조 또는 변조한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의 제출을 명한다.
- (5) 기타 필요한 시정조치

제37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또는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처벌결정을 할 경우,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타인의 특허도용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 아래의 방식에 의하여 행위자의 위법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

- (1) 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 (2) 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취한 비용을 위법소득으로 한다.

제39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처벌결정을 한 후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기간에 결정한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타인의 특허도용 및 허위의 특허표시 행위의 행위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정한 은행에 처벌결정서에 명시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일 과태료 금액의 백분의 삼을 과태료에 부가한다.

제41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법에 의한 공무집행업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안부서는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42조 원(原)중국 전리국과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규정이 이 판법과 불일치할 경우, 이 판법을 기준으로 한다.

제43조 이 판법은 국가지식산권국의 해석에 따른다.

제44조 이 판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4
12-002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인도진출과 대응	2012.4
12-003	일본의 新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을 연다	2012.4
12-004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파워 엘리트 100인	2012.4
12-005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러 경제관계 전망	2012.4
12-006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2012.5
12-007	프랑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및 동향	2012.5
12-008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 - 자동차부품	2012.5
12-009	쿠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쿠바 협력 방안	2012.5
12-010	CIS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및 유망 프로젝트	2012.6
12-011	방글라데시 소매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2.6
12-012	유럽 재정위기 2년, 주요국 변화 동향	2012.6
12-013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2012.6
12-014	해외시장에서 바라본 2012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2012.6
12-015	2012 3/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6
12-016	한미 FTA 100일, 중기 수해품목과 성공사례	2012.6
12-017	최근 콜롬비아 주요 경제이슈와 한-콜 FTA 활용 방안	2012.6
12-018	한·터키 FTA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7
12-019	호주 이러닝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2.7
12-020	수교 50주년 한-뉴 경제관계변화와 협력방안	2012.7
12-021	미국 항공산업 진출 전략	2012.7
12-022	한-EU FTA 1주년, 주요국별 성과 분석 및 유망품목	2012.7
12-023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	2012.7
12-024	호주 온라인 쇼핑물 진출 방안	2012.7
12-025	뜨거워지는 일본 태양광 시장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	2012.7
12-026	일본의 비관세 장벽 현황	2012.7
12-02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플랜지)	2012.8
12-028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협압측정기)	2012.8
12-02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자동차브레이크패드)	2012.8
12-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공구절삭기)	2012.8
12-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금고)	2012.8
12-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디지털 도어락)	2012.8
12-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위성방송수신기)	2012.8
12-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의료 보호대)	2012.8
12-03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인쇄기계)	2012.8
12-03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자동차 배터리)	2012.8
12-03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전기용접기)	2012.8
12-038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콘택트렌즈)	2012.8
12-03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태양광 모듈)	2012.8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4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피부미용기기)	2012.8
12-04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CCTV)	2012.8
12-042	동남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상) - 아세안5편	2012.8
12-043	동남아 소매유통시장 현황과 진출방안 (하) - CLM 편	2012.8
12-044	불황을 뚫은 세계시장 대박상품	2012.8
12-045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화장품)	2012.8
12-046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합성수지, 고무)	2012.8
12-047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밸브, 기타기계류)	2012.8
12-048	2012 인도진출 리스크와 대응	2012.9
12-049	북미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0	유럽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1	일본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2	중국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3	아세안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4	서남아시아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5	중동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6	중남미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7	CIS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8	아프리카 지역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2.9
12-059	세계경기불황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동향	2012.9
12-060	한미 FTA 발효 6개월, 對美 수출 성과분석	2012.9
12-061	2012년 4/4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10
12-062	무역대국의 성장과정과 시사점	2012.10
12-063	이집트 신정부 수립 100일 이후 경제 및 진출환경 전망	2012.10
12-064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 주목받는 유망시장	2012.11
12-065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2.11
12-066	2012년 하반기 해외시장 수출여건 점검	2012.11
12-067	유럽 재정위기 현주소 진단 및 우리기업 시사점	2012.11
12-068	최근 일본 산업계 동향 및 변화	2012.11
12-069	주요국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2012.11

KOCHI 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Made In China 에서 Made WITH China로	2012.6
12-002	중국 소비자, 찾는 제품 따로 있다	2012.6
12-003	중국 내륙, 뉴 프런티어를 주목한다	2012.7
12-004	광둥성 환경보호 산업 시장동향 및 우리기업의 효과적 진출방안	2012.8
12-005	2012 한·중 기업 상호 인식과 평가	2012.9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 대형 유통망 조사	2012.1
12-00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구조 변화와 유망품목	2012.1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한류와 국가브랜드 조사 보고서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2012.2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2
12-002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2012.2
12-003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12.3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2
12-002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2012.2
12-003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12.3

KOTRA 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러시아연방 경제산업개발 프로그램 - 2006 ~2015 러연방 체육 및 스포츠 발전 -	2012.1
12-00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2012.1
12-003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 전략	2012.1
12-004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2.1
12-005	한국 투자가이드	2012.1
12-006	Doing Business in Korea	2012.1
12-007	韓国投資指南	2012.1
12-008	韓国投資ガイド	2012.1
12-010	2011 외국인투자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2.3
12-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1	2012.3
12-012	韓-美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대응전략	2012.3
12-013	해외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2년 개정증보판)	2012.4
12-014	중국 화상경제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2012.3

KOTRA 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15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2012.4
12-016	Inward FDI 통계 수집 법제화 벤치마킹 조사	2012.5
12-017	IT 기업 일본 시장 진출 내비게이터(Q&A집)	2012.5
12-018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5
12-019	블랙 다이아몬드를 잡아라 : 아프리카 주요국 유망상품 진출전략	2012.6
12-020	세계로 미래로 달려라! 중기기관차 - 우리 중소기업의 좌충우돌 해외진출 story	2012.6
12-021	'11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2.6
12-022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마케팅 가이드	2012.6
12-023	한-미안남 경제협력 포럼 종합 결과 보고서	2012.6
12-024	주요 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	2012.7
12-025	모바일산업 해외시장 동향조사	2012.7
12-026	Global Green Hub Korea 2012 결과보고서	2012.7
12-027	World Investment Report 2012 요약번역본	2012.7
12-028	「2011 Fortune Global 500」 기업의 한국 투자진출현황 분석	2012.7
12-029	50주년 기념사업 종합결과 보고서	2012.7
12-030	Green Report 15호	2012.5
12-031	한미 FTA 활용 자동차부품 대미 진출확대 방안	2012.7
12-035	북한 비즈니스 어떤 회사가 하나	2012.8
12-036	201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결과보고서	2012.8
12-037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2.8
12-038	강대리의 링크드인 수출마케팅 따라잡기	2012.8
12-039	2012/2013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신흥시장편	2012.9
12-040	2012/2013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선진시장편	2012.9
12-041	2012/2013 국가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중국시장편	2012.9
12-042	2012 글로벌 한류 동향 및 진출 전략	2012.9
12-043	2011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2.10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2012.1
12-002	2012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2.1
12-003	2012년 중국-중남미 포럼	2012.1
12-004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2012.1
12-005	2012 러시아 포럼	2012.1
12-006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	2012.2
12-007	한-미 FTA시대, 중소기업 새로운 길 열렸다	2012.2
12-008	위기 속의 유럽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2012.2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9	떠오르는 희망, 신흥시장을 선점하라	2012.2
12-010	한-CIS 비즈니스 포럼	2012.3
12-011	한-미 FTA 활용, 美 보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2.3
12-012	Global Energy Plaza 2012 세미나	2012.5
12-013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Forum 2012	2012.4
12-014	한국투자환경설명회	2012.4
12-015	[한중수교 20주년]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2012.4
12-016	2012 글로벌 공항/철도기자재 조달플라자	2012.4
12-017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2012.5
12-018	글로벌인재사업 심포지엄 2012	2012.5
12-019	Chemical Innovation with Korea	2012.5
12-020	온라인 유통시장 100배 활용하기 설명회	2012.6
12-021	한미 FTA 대응 미국 지재권 전략 설명회	2012.5
12-022	한-아프리카 산업자원 협력 포럼	2012.6
12-023	제9회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	2012.6
12-024	『P300프로젝트』 지원사항 안내 2012	2012.6
12-025	한국무역 50년, KOTRA 50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2012.6
12-026	국제개발은행(MDB) 조달 설명회	2012.6
12-027	- 한-EU FTA 발효 1주년 'Europe Business Week' - 유럽 대형유통망 진출 전략 설명회	2012.6
12-028	이란 대체시장 발굴 설명회	2012.7
12-029	한-중앙아 투자 포럼	2012.7
12-030	중국 ESCO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2012.7
12-031	주요 투자유망국 투자환경 비교설명회	2012.7
12-032	Europe M&A Plaza 2012	2012.6
12-033	라오스 투자환경 설명회	2012.7
12-034	수출활로 개척 포럼	2012.7
12-035	미얀마 新투자제도 설명회	2012.8
12-036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경제 어디로 가나	2012.8
12-037	대중화권(대만/홍콩)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2012.9
12-038	12th Global Alliance Project: Cisco-GAPS Launching Conference	2012.9
12-039	BYD 초청 설명회 자료집	2012.10
12-040	미얀마 투자환경 설명회(Myanmar Investment Forum)	2012.10
12-041	중국 진출, 내륙시장을 뚫어라	2012.10
12-042	미개척 신시장 창업 투자 설명회	2012.10
12-043	제2회 한-대만 산업협력 포럼 및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2012.10
12-044	KOREA-Philippines FTA FORUM 2012	2012.10
12-045	KOREA-ASEAN FTA SEMINAR 2012	2012.10
12-046	한국 투자환경설명회	2012.10
12-047	아시아 주요유통망 소식 설명회	2012.10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48	2012 한-중동 비즈니스 워크 - 한-GCC 경제협력을 통한 MENA 재건시장 진출 설명회	2012.11
12-049	2012 한-중동 비즈니스 워크 - FTA와 FEZ를 활용한 중동시장 공동진출 설명회	2012.11
12-050	2012 글로벌 공공조달 플라자	2012.11
12-051	KOREA-ASEAN FTA Seminar 2012 (Vietnam 설명회용)	2012.11
12-052	KOREA-ASEAN FTA Seminar 2012 (Malaysia 설명회용)	2012.11
12-053	2012 일본 소비자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2.11
12-054	제5회 해외투자유공자 포상 및 해외투자사례 공모전 시상식(사례발표)	2012.11
12-055	아프리카 비즈니스 트렌드 포럼	2012.11
12-056	시진핑 시대의 한중산업협력	2012.11

KOTRA 자료 12-044

중국 특허관리 종합 매뉴얼

발 행 인: 오영호

편 집 인: 김상철

발 행 처: KOTRA

주 소: 서울 서초구 현릉로 13

전 화: 02-3460-7114

홈페이지: www.kotra.or.kr
